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성과와 발전 방안

심포지엄

일시 | 2022. 3. 25.(금) 14:00~17:30

장소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 진행( 유튜브 채널)



PROGRAM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성과와 발전 방안 심포지엄

- 일 시 : 2022년 3월 25일(금), 14:00~17:30
- 장 소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 진행(유튜브 채널)
- 주 최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주 제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성과와 발전 방안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20 (20m)	<인사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말 : 한기정 이사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기념촬영	▪ <사회> 김명기 국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14:20~15:40 (1h20m)	<주제발표> (주제 1)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장학금 지원제도의 성과와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건보 원장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제 2)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제도의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진근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제 3)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변호사 연수제도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상경 원장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좌장> 정현미 원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40~16:00 (20m)	휴식시간	
16:00~17:30 (1h30m)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승환 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석천 원장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태경 과장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유동주 법조팀장 (머니투데이)▪ 김기원 법제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17:30	폐 회	

Contents

인사말

인사말	1
한기정 이사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제발표

1.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장학금 지원제도의 성과와 과제	5
권건보 원장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제도의 개선방안	23
정진근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변호사 연수제도 활성화 방안	41
이상경 원장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종합토론

[토론 1] 정승환 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1
[토론 2] 장석천 원장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9
[토론 3] 김태경 과장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73
[토론 4] 유동주 법조팀장 (머니투데이)	81
[토론 5] 김기원 법제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105



인사말

한기정 이사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인 사 말

한기정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한기정입니다.

먼저 오늘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성과와 발전 방안> 온라인 심포지엄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각계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귀한 시간을 내어 접속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의 틀을 바꾼 역사적인 변화였습니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도입된 법전원 제도는 지난 13년간 그 틀을 갖추고 법조인 양성 제도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법전원을 통해 1만 6,000명 이상의 법조인이 배출되었고, 송무 영역 외에도 기업과 공익 영역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양성된 전문 법조인들이 우리 사회 곳곳으로 진출하여 국민을 위한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고 법치주의 기반을 확대하고 있는 점은 법전원 도입의 중요한 성과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법전원은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탄탄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는 등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전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지만, 여전히 보완하고 정상화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특히 자격시험으로 설계된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으로 변질함으로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만 매몰되는 현상은 시급히 개선점을 찾아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심포지엄은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난 13년간 법전원이 일군 성과를 살펴보고, 나아가 법전원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그리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제발표에서 다루게 될 ‘법전원 입학전형·장학금 지원제도’, ‘법전원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제도’,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변호사 연수제도’라는 세 가지의 큰 주제는 법전원 개원부터 지금까지 가장 주목받았던 이슈입니다.

법전원협의회도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법조인 양성 제도가 개선되고, 법전원 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어 심포지엄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3. 25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한 기 정

주제발표 1.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장학금 지원제도의 성과와 과제

권건보 원장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장학금 지원제도의 성과와 과제

권건보 | 원장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 서설

- 우리나라의 로스쿨제도는 1995년부터 10년 넘게 전문가들의 숙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2007년에 도입이 결정된 것이었다.
 - 2007년 제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의 25개 대학이 엄격한 교원·시설 및 교육과정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게 되었다.
 -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학년도부터 제1기 신입생이 입학하면서 정식으로 개원한 이래 현재 1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 그동안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법시험제도의 부활 또는 부분적 존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기존의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폐해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안착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제약 요소를 제거하여 로스쿨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사법시험제도는 우수한 법조인력의 양성이라는 기능을 나름대로 수행하여 왔으나, 일회의 시험결과에 의존하는 제도적 특성으로 인하여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 사법시험은 그 응시횟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고, 사법시험 응시자격에도 사실상 제한이 없어 법조인 선발·양성과정과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았다.
 - 그래서 법학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시험에만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법조인이 되기를 원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을 도외시하고 고시학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 또한 법조인 선발·양성과정이 교육제도와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 보니, 충분한 인문교양이나 체계적인 법학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시험 위주의 도구적인 법률지식만 습득하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었다.
 - 이는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법률가를 양성하고 선발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이었다.

- 이에 따라 학부 과정에서 다양한 전공을 통해 충분한 인문교양을 쌓은 사람들이 전문대학원의 과정에서 체계적인 법학지식을 습득한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었던 것이다.¹⁾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 목적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
 -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 이후 법학 이외의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 법조인으로 양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잡다기한 법률문제와 시민들의 다양한 법률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한편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른 폐쇄성과 서열주의 등과 같은 폐해도 현저히 줄어드는 부수적 효과도 낳고 있다.
-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선거의 과정에서 사법시험제도의 도입 여부를 둘러싼 공약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로스쿨제도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 이러한 시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객관적인 평가와 발전방안의 모색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 이 글에서는 그동안 실시해온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과 장학금 지급제도를 중심으로 그 현황과 합리적 개선 노력, 그간의 성과와 한계 등을 살펴보고 향후 입학전형과 장학금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1) 현재 2009. 2. 26. 2008헌마370 등, 판례집 21-1상, 292, 303-304; 현재 2016. 3. 31. 2014헌마1046, 판례집 28-1상, 531, 535 등.

1. 입학전형제도의 현황

(1) 개관

-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성패는 국민이 원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얼마나 잘 선발하여 교육하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법학전문대학원은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제도는 지원자가 로스쿨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전공과 경력, 성장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골고루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와 관련하여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따가운 시선이 존재한다.
 - 모든 입학시험이나 채용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이 중요하겠지만, 사법시험과 비교되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 있어서 입시의 공정성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이에 따라 전국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다양한 배경과 뛰어난 잠재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입학전형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입학전형의 절차

-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은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 학교마다 차이가 존재하지만, 신입생선발의 전반적인 절차는 전국 25개의 법학전문대학원이 공통적으로 진행된다.
 - 매년 7월 시행되는 법학적성시험(LEET)을 거친 후 개별 로스쿨의 입학 전형에 따라 원서접수, 면접 및 구술고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²⁾



2) 이하의 각종 그래픽 자료는 『로스쿨 팩트 체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21. 4. 참조.

(3) 입학전형의 방법과 내용

-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전형에서 법학적성시험(LEET), 학부성적, 외국어성적, 자기소개서, 서류평가, 구술면접 등을 평가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 구체적인 입학전형의 평가기준, 전형요소, 배점, 입학전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와 방법 등은 매년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 2021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 사례

전형방법 및 내용				특별전형	비고
1단계 (합계)	2단계 (합계)	선발방법			
		1단계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학성적: P/F • LEET 성적: 60점 • 대학성적: 60점 • 정성평가: 80점 [합계: 2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성적: 200점 • 면접 및 구술고사: 50점 [합계: 250점] 	정원의 150% 선발 (특별전형 300%)	총점 순위	11명 이상 (가군)	비법학사 1/3 이상, 타대학 1/3 이상

(4)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방안

- 구체적인 입학전형의 평가기준, 전형요소, 배점, 입학전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와 방법 등은 매년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함으로써 입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 지원자가 제출하는 모든 입시 서류는 개인식별정보(성명,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학번, 생년월일, 출신학교명)를 블라인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도 부모·친인척의 실명, 직장명(직위, 직종)을 기재하는 경우 실격 조치한다.
- 면접을 진행할 때에도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한 후 입시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외부 면접위원을 각 조 심사위원에 한 명 이상 포함시키는 등 면접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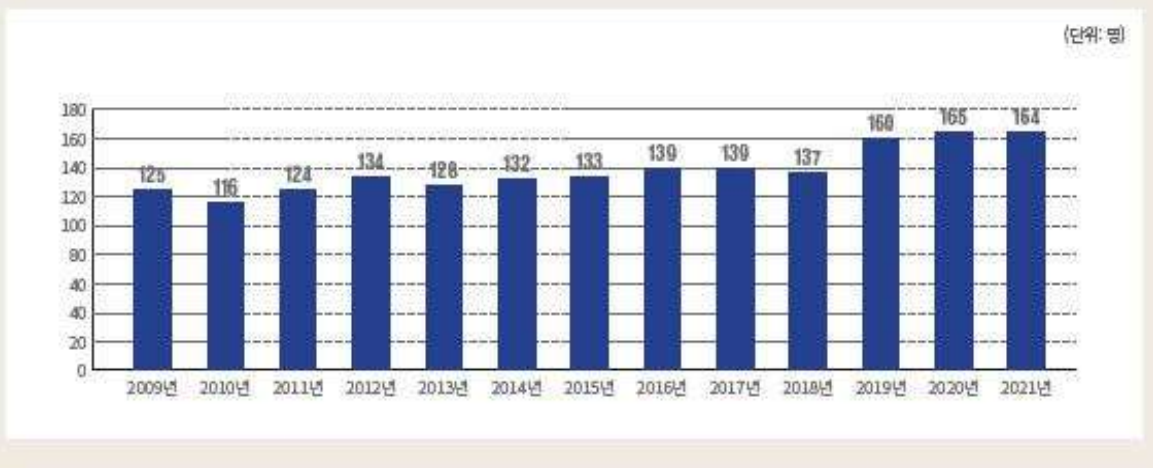
2. 입학전형제도의 성과

(1) 특별전형제도에 따른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약자 출신 법조인 증가

-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 2018학년도까지는 매년 입학자의 5%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였으나, 2019학년도부터는 특별전형의 비율을 입학자의 7%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 2021학년도까지 특별전형을 통해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의 수는 1,796명에 이른다.
- 이러한 특별전형제도는 취약계층(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출신,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에서도 다수의 법조인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특별전형제도 선발 인원>



※ 특별전형 구체 통계

2014년~2021년 특별전형제도로 입학한 학생 1,157명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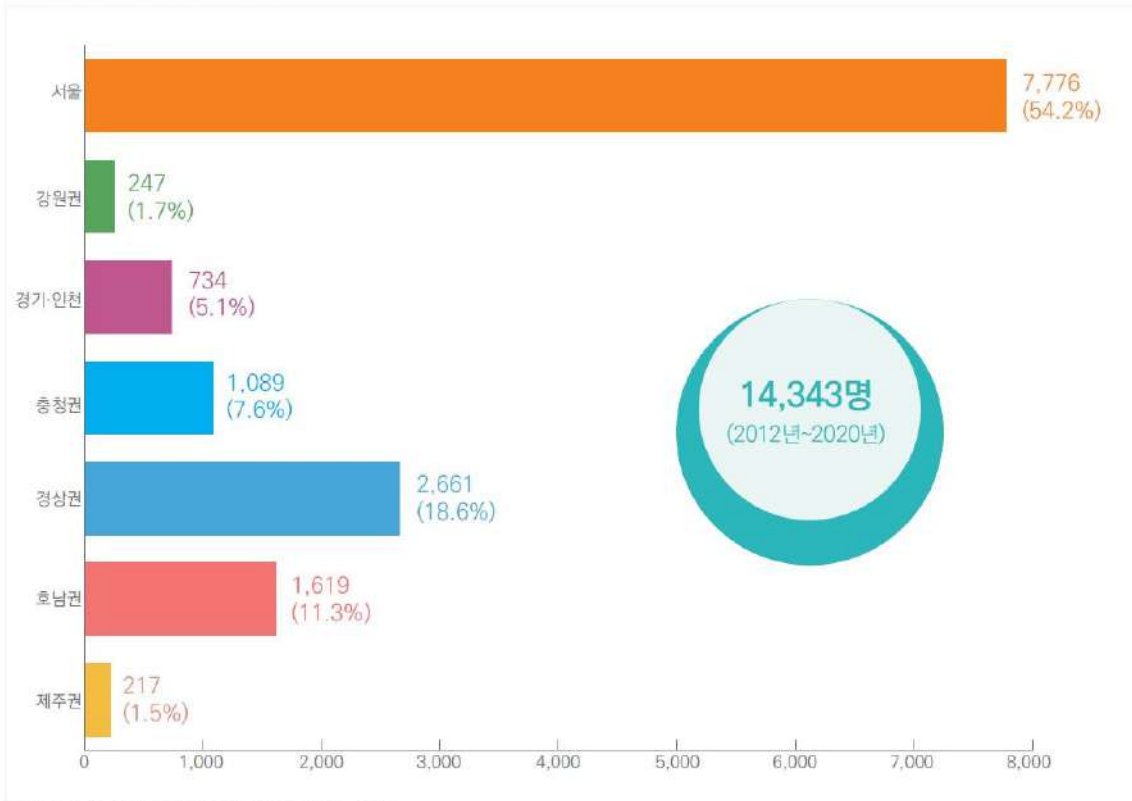
구분		선발인원	구분		선발인원
신체적 배려	장애인	68	사회적 배려	농어촌지역 출신자	142
	기타	2		아동복지시설 재원경력자	2
경제적 배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59		한부모가족지원법 조손가정 자녀	2
	차상위계층	446		북한이탈주민	4
	기타	40		5.18민주유공자예우	5
사회적 배려	국가유공자	67		산업재해 대상자	5
	독립유공자	8		보훈관계법령의 교육지원 대상자	2
	다문화가족	5		합계	1,157

(2) 지역균형인재선발제도에 따른 지역별 변호사 수 증가

-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으로 전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법조인들이 배출될 수 있게 되었다.
 - 그리고 지방 소재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의 상당수가 그 인근 지역에서 법조인으로서 활동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이에 따라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되었다.

〈지역별 변호사 배출 분포〉

(단위: 명, %)



※ 변호사시험 합격자 14,343명 기준(2012년~2020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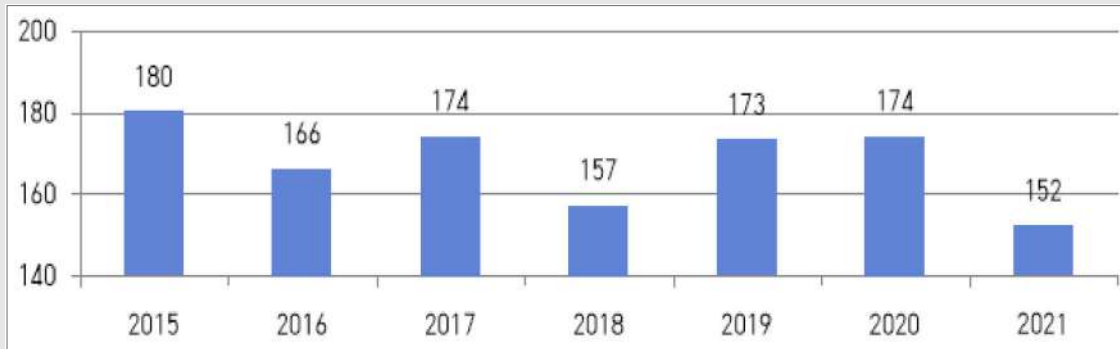
구분	2009년	2021년	증감률	구분	2009년	2021년	증감률
서울	6,830	18,483	171%	부산	368	950	158%
경기북구	206	423	105%	울산	95	205	116%
인천	299	627	110%	경남	146	381	161%
경기중앙	511	1,090	113%	광주	221	538	143%
강원	81	169	109%	전북	111	306	176%
충북	81	179	121%	제주	36	124	244%
대전	284	624	120%	합계	9,612	24,800	158%
대구	343	701	104%				

※ 자료출처: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변호사백서 및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 2021년 자료 '21.2.8 기준, 준회원(휴업, 미개업) 변호사(4,817명) 제외

- 한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5학년도부터 지방 소재 로스쿨은 해당 지역 대학교 출신자를 총 모집정원의 일정 비율(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영남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의 경우 20%, 제주대와 강원대의 경우 10%) 이상 선발하게 되었다.
 - 그 결과 2015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1,176명의 지방대학 졸업생들이 해당 지역 로스쿨에 입학하였다. 이로써 해당 로스쿨들은 그 지역의 대학교 출신자들이 법조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균형적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지역균형인재 선발 인원〉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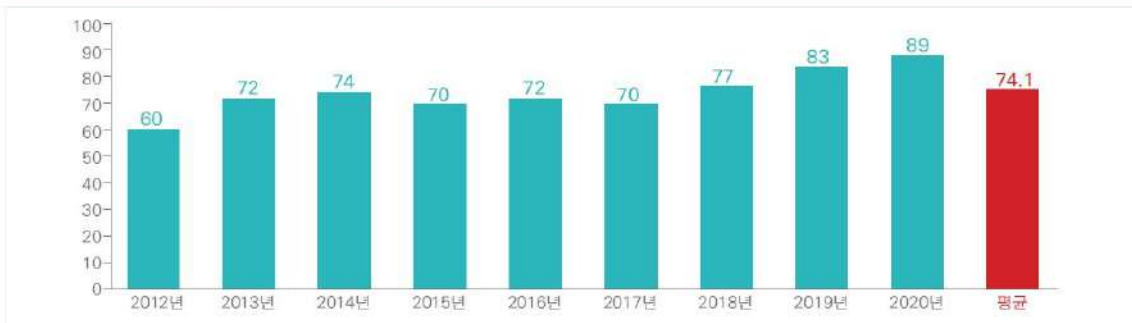
※ 2023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입학정원의 15% 이상 선발(학령인구가 적은 강원과 제주는 각각 10%, 5% 이상 선발)

(3) 출신대학의 다양성 증대

- 사법시험 합격자(2008년~2017년, 4,856명)의 출신대학과 변호사시험 합격자(2012년~2020년, 10,674명)의 출신대학을 비교 분석한 결과,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 이후 법조인의 출신대학이 과거보다 훨씬 다양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출신대학 수는 연 평균 34.5개교에 그쳤으나,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간 변호사시험 합격생들의 출신대학 수는 연 평균 74.1개교에 이르렀다.
 -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출신대학 수가 약 2배 이상 더 많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출신대학 수(2012년~2020년)〉

(단위: 대학 수)



※ 출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개별 로스쿨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으며, 22개교에 한함.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대학 수(2008년~2017년)〉

(단위: 대학 수)



출처: 사법연수원 (대학교 명이 '기타'로 표기되어 있으면 산출에 포함하지 않았음.)

- 사법시험 합격자(2008년~2017년) 4,856명 중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53.11%에 달했으나, 변호사시험 합격자(2012년~2020년) 11,623명 중 위 대학들의 출신은 48.34%로 파악되었다.
 - 그리고 사법시험 합격자(2008년~2017년) 4,856명 중 10대 대학 출신자는 4,002명으로 전체의 82.41%를 차지했으며, 변호사시험 합격자(2012년~2020년) 11,623명 중 10대 대학 출신자는 8,748명 (75.27%)으로, 7.14% 차이를 나타냈다.
- 이상과 같은 통계는 로스쿨제도가 고질적인 주요대학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음을 보여준다.

(4) 학부 전공의 다양성 증가

-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양성한다는 설립 취지에 따라 로스쿨에는 매년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입학하고 있다.
 -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법조인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반면, 로스쿨 시대에는 법학 이외의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자들이 법조인으로 양성되고 있다.
 - 이로써 복잡다기한 법률문제와 시민들의 다양한 법률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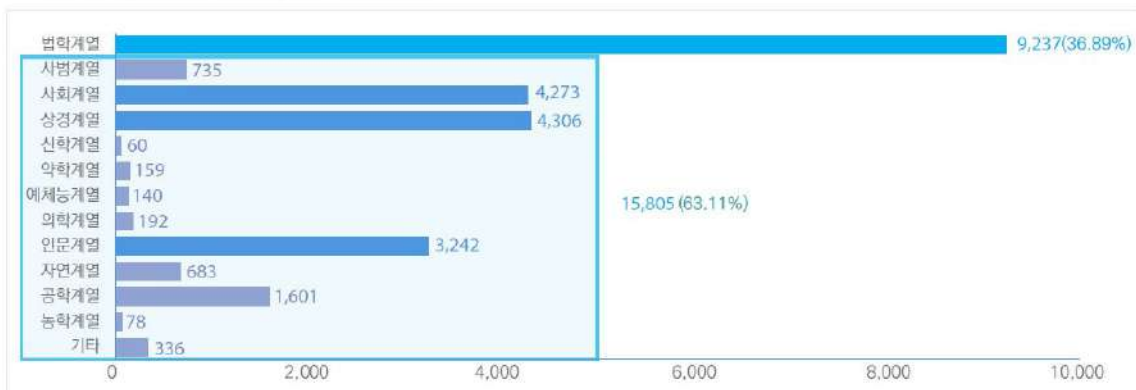
사법시험 합격자 4,856명(2008년~2017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14,343명(2012년~2020년)



로스쿨 입학생 25,042명(2009년~2020년)



※ 2010학년도 경의 강원총원 인원이 포함되지 않음.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제도의 현황

1. 장학금 지원제도의 개관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장학금제도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로스쿨이 사회의 ‘희망 사다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장학금 제도는 교육부가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 장학금과 개별 로스쿨에서 지원하는 기타 자체 장학금으로 구분된다.
- 교육부는 2016학년도부터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로스쿨 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국고 48.87억원 및 대학 자체 재원 활용).
 - 다만, 현행 로스쿨 교육과정이 6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학생당 로스쿨(타 대학 포함) 장학금의 수혜횟수를 총 6학기로 제한하여 특정 학생이 과도하게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있다.
- 한편, 개별 법전원은 기초수급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속하는 학생들 이외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서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법전원은 장학금 신청 학생에 한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구간을 확정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 지원순위〉

순위	지원내용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구간, 2구간, 3구간 : 등록금 100% 이상 ※ 교재비, 생활비 등 생활장학금 지원 적극 권장
2순위	소득 4구간 등록금 90% 이상
3순위	소득 5구간 등록금 80% 이상
4순위	소득 6구간 등록금 70% 이상
5순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원칙에 맞도록 장학금 지급기준과 지급금액을 대학이 규정으로 마련하여 시행

※ (1순위) 국고 및 대학 자체재원 활용 지원 / (2~5순위) 대학 자체재원으로 지원

2. 장학금 지급의 성과

(1) 가구 연소득 구간별 장학금 지급현황

※ 가구 연소득 구간별 장학금 지급 현황 (2020학년도)

(단위: 명, %)

소득구간	지급인원(명)	비율(%)	누적비율(%)
기초생활수급자	226	1.9	1.9
소득 1구간	1,004	8.4	10.3
소득 2구간	402	3.4	13.7
소득 3구간	401	3.3	17.0
소득 4구간	408	3.4	20.4
소득 5구간	154	1.3	21.7
소득 6구간	469	3.9	25.6
소득 7구간	200	1.7	27.3
소득 8구간	356	3.0	30.3
소득 9구간	332	2.8	33.1
소득 10구간	735	6.1	39.2
기타	1,337	11.1	50.3
합계	6,024	50.3	-

※ 2020학년도(1, 2학기) 재학생 12,000명 기준

※ '기타'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 장학금(섬적장학, 근로장학 등)

(2) 장학금 지급 비율

- 로스쿨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2,321명(2017년), 2,301명(2018년), 2,364명(2019년), 2,305명(2020년)으로 매년 평균 2,323명(19.36%)이 등록금 100% 이상의 장학금을 받았다.
- 대다수의 로스쿨에서는 특별전형제도로 입학한 학생들(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출신, 다문화가정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액 장학금'을 포함해 '생활비'도 지원하고 있다.



(단위: 명,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00% 이상	1,152	19.20	1,149	19.15	1,178	19.63	1,186	19.77	1,142	19.03	1,163	19.38
90%~100%	299	4.98	371	6.18	277	4.62	316	5.27	286	4.77	334	5.57
80%~90%	78	1.30	90	1.50	74	1.23	77	1.28	81	1.35	56	0.93
70%~80%	132	2.20	119	1.98	146	2.43	123	2.05	106	1.77	133	2.22
60%~70%	80	1.33	103	1.72	82	1.37	66	1.10	78	1.30	92	1.53
50%~60%	165	2.75	160	2.67	139	2.32	151	2.52	179	2.98	163	2.72
40%~50%	176	2.93	143	2.38	162	2.70	171	2.85	146	2.43	150	2.50
30%~20%	144	2.40	141	2.35	160	2.67	144	2.40	173	2.88	150	2.50
20%~30%	219	3.65	252	4.20	216	3.60	249	4.15	234	3.90	242	4.03
10%~20%	270	4.50	182	3.03	216	3.60	170	2.83	191	3.18	121	2.02
~10% 미만	367	6.12	388	6.47	312	5.20	312	5.20	494	8.23	353	5.88
합계	3,082	51.36	3,098	51.63	2,962	49.37	2,965	49.42	3,110	51.82	2,957	49.28

※ 학기별 재학생 6,000명 기준

- 등록금 대비 50% 이상 장학금 수혜 학생 수는 학기별 약 2,000명으로 전체의 32~33%에 달한다. 즉, 로스쿨 재학생의 33% 가량은 등록금의 절반만 내고 학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취약계층이 아니어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다.

〈등록금 50% 이상 장학금 수혜 인원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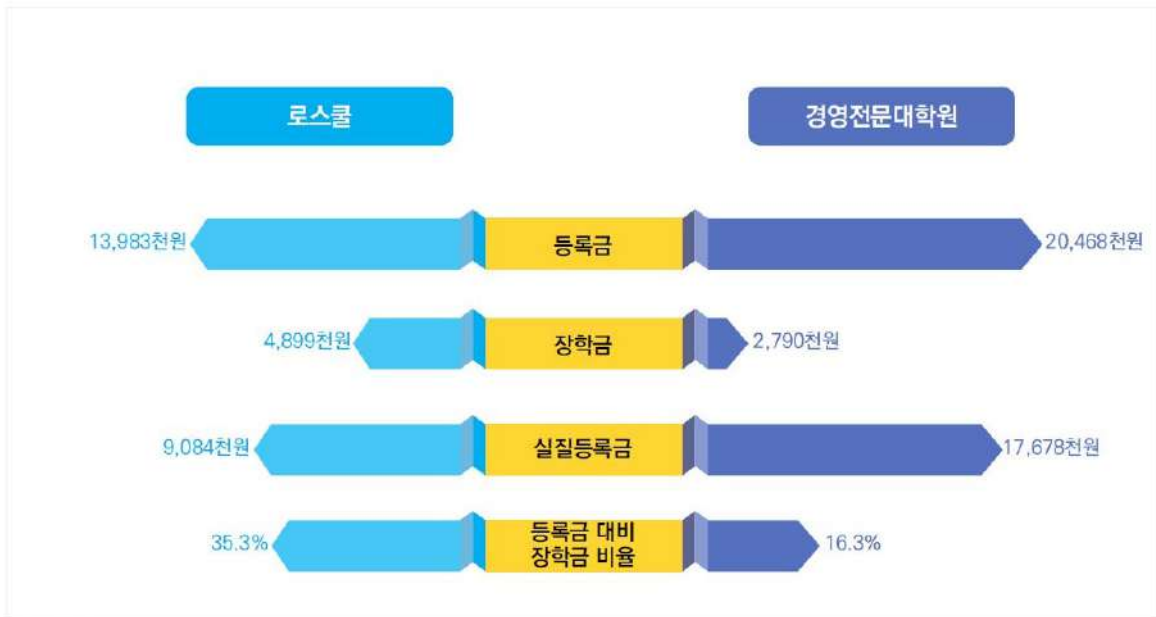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학기	1,995명 (33.25%)	1,906명 (31.77%)	1,896명 (31.60%)	1,872명 (31.20%)
2학기	1,961명 (32.68%)	1,992명 (33.20%)	1,919명 (31.98%)	1,941명 (32.35%)
합계	3,956명 (32.97%)	3,898명 (32.48%)	3,815명 (31.79%)	3,813명 (31.78%)

※ 학기별 재학생 6,000명 기준

(3) 등록금 수입 대비 장학금 지급액

- 2019학년도 기준 총 등록금 수입 851억 중 장학금 지급액은 295억원이다. 이 중 정부 지원 장학금은 45억원(15.2%)이며, 나머지 250억원(84.8%)은 학교가 부담하였다.
-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한 경영학 석사 과정인 '경영전문대학원'의 등록금·장학금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로스쿨의 등록금은 현저히 낮으며 장학금은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대학원별 연간 1인당 등록금, 장학금, 실질 등록금 비교('20년도)〉



자료출처: 대학알리미
 등록금, 장학금, 실질등록금,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모두 '평균값'임.

IV 평가와 과제

1. 입학전형 관련

-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은 관련 법령과 교육부의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으며, 로스쿨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기소개서, 면접방식, 서면평가 등에 있어서 많은 개선조치를 마련하였다.
 - 입학전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입학전형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에서 정성적 요소로서 서류평가와 면접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 먼저 서류평가는 주로 지원자가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대상으로 하는데, 자기소개서에는 학력, 경력, 봉사활동, 본인의 가치관, 경험과 목표, 비전, 지원동기, 법조인으로서의 자질 등이 기재된다.
 - 이를 통해 지원자 본인은 물론 부모나 친인척의 성명, 직장, 직위 등 각종의 신상정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입시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로스쿨이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원자의 지원동기나 창의성, 잠재력 등을 자기소개서를 통해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 이러한 과정에서 입시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으려면, 지원자의 인적 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적시하도록 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으로 인재상의 다양성과 전형의 공정성을 고려한 표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이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 만한 것이다.
- 구술면접은 일반적으로 인성면접과 지성면접으로 나뉘는데, 지성면접은 통상 시험장에서 배부되는 제시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면접관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 그런데 면접의 과정에서 지원자의 얼굴, 이름, 언변, 억양 등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이에 따라 최근 관련 법령과 교육부의 방침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무자료 면접, 수험번호가(假) 번호 부여, 면접에서 부모나 친인척 신상 유추 질문 금지, 외부 면접위원 위촉 등을 실시하고 있다.
 - 그런데 면접문제의 출제위원 선정과 출제과정, 면접위원 위촉과 배정 등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면접문제의 출제와 선정을 절차적으로 분리하고, 면접위원도 면접 직전에 추첨을 통해 방식으로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원자마다 주어지는 면접문제가 다르거나 면접위원의 질문내용이 다를 경우, 그러한 우연적 사정에 따라 지원자의 면접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따라서 면접문제를 단일화하고 면접위원의 질문을 가급적 통일하도록 하여 우연적 사정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이 입시의 방식이나 절차를 어느 정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 하지만 각 학교마다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이 다를 수 있고, 특성화 등 교육과정에 있어서 차별성을 기할 필요도 있다.
 - 이러한 점에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제도가 획일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할 것이다.
 -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평가요소의 구성, 서면평가의 방식, 구술면접의 평가항목 등을 각 학교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고, 면접의 요령과 기술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지역균형인재선발제도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인재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로 인해 지역발전으로 긍정적 환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법률에 의해 도입된 것이다.
 - 이에 따라 2015학년도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해당 지역 대학교 출신자를 총 모집정원의 20% 또는 10% 이상을 선발하고 있다.
 - 하지만 지역균형인재에 대한 쿼터제는 해당 지역의 로스쿨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 실제로 이러한 선발제도로 합격한 학생들 중에는 학업성취도가 매우 저조하여 제때 졸업하지 못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쟁력이 평가되는 현실에서 이러한 쿼터제의 적용을 받는 로스쿨의 경우 수도권 로스쿨에 비하여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 따라서 이 제도로 인한 해당 로스쿨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지역균형인재선발제도를 지금과 같은 경직적 할당제의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 이상의 수학능력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서만 우선 선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이 경우 지원자 중에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미달부분만큼을 일반전형의 정원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 혹은 수도권의 로스쿨에서도 지역균형인재에 대한 최대 할당비율(20%)과 기존의 특별전형 선발 비율(7%)을 합산한 비율(27%) 이상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다면, 수도권 로스쿨과 비수도권 로스쿨 간의 형평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장학금 관련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자체적 재원으로 재학생에게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 학교로서는 무거운 재정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 이러한 상황에서도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그동안 관련 법령과 교육부의 방침에서 정한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다.
 - 최근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신입생 중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조치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을 관장하는 정부부처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그동안 전국의 많은 법학전문대학원은 인가기준에서 정한 교원, 시설, 장학금 등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대학의 재정능력에 비하여 과잉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모집정원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재정적 압박으로 로스쿨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더군다나 최근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대학의 등록금이 동결 또는 인하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이러한 힘든 로스쿨의 여건을 고려하여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정진근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정진근 |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 교육과정 평가기준 개요

1. 지향의 방향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는 총 5개 평가영역으로 구성되는데, 학생, 교원,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성도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교육과정은 “교육에 의한 법조인 선발제도”의 핵심이며,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의 목표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교육과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에서 제시하는 교육이념을 반영”한다는 평가기준 65페이지의 첫머리는 교육과정이 어떠한 가치를 지향해야 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역시 어떠한 가치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법 제2조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2. 교육과정의 3대 축

평가영역 4.의 교육과정은 총 5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는데, 교육목표, 교육과정 편제, 학사관리, 실무과목, 국제화 및 특성화가 그것이다. 이 중 교육목표는 모든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총론의 역할을 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학사관리는 교육과정의 이수방법론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의 3대 축은 교육과정 편제, 실무과목, 국제화 및 특성화라고 할 수 있다.

즉,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교육과정의 편제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실무과목을 통해 법적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고양해야 하는데 이는 실무과목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전문적인 능력을 고양하여 국제화되는 새로운 조류 속에서 전문적인 지식능력을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는 국제화 및 특성화에 반영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3. 교육과정 중 교육목표 평가기준

교육목표는 '교육성과'와 '성과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목표 지향적 교육활동을 전개해야 한다(3주기 개정 평가기준 66쪽). 이 때 교육성과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역량을 의미하며, 성과기준이란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생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역량을 바탕으로 실제 사고하고, 말로 표현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3주기 개정 평가기준 67쪽). 또한, 법 제2조의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의 영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법 제20조).

교육목표는 국제화 및 특성화 목표도 제시하고 있다. 이로부터 국제화 및 특성화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중요한 교육이념을 구성하는 축을 확인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국제화 및 특성화 교육을 통하여 습득해야 할 지식과 역량에 대한 교육성과 목표를 적절히 제시하고 있어야 하며, 학생들은 국제화 및 특성화 교육의 교육성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3주기 개정 평가기준 69쪽)

4. 교육과정 중 교육과정 편제 평가기준

교육과정의 편제 평가기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이 법 제2조의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성과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편성·운영되어야 하며, 이 때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위한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하여 교육과정을 개선·발전시켜 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교육방법과 강의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제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과 강의의 방법을 포함하여 강의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강의평가의 결과가 제도적·체계적·효율적으로 활용되어 교육방법 개선 노력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체계성, 교육과정의 자율성, 교육과정 편제의 적절성을 평가요소로 한다.

이 중 교육과정의 체계성과 교육과정 편제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교육과정 MAP을 요구하고 있다.

5. 교육과정 중 학사관리 평가기준

학사관리는 교육과정의 이수에 관한 방법론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즉,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률가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전문대학원으로서 교육기관 내에서의 충실한 교육과 직업윤리의 배양을 위해 충분한 수업일수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출결관리를 엄정하게 하여야 하며, 교육내실화 및 직업윤리의 제고를 위해 졸업기준을 적절하게 설정하고 운영해야 한다. 또한, 졸업을 위한 기준은 적절하게 설정되어 공개되어야 하며, 실제 시행에 있어 기준이 공정하고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절차가 공정하게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업의 충실성 담보, 성적평가제도의 엄정성, 졸업 관련 학사관리의 엄정성을 평가요소로 한다.

6. 교육과정 중 실무과목 평가기준

실무과목은 법학전문대학원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은 졸업한 법조인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정보조사와 법문서 작성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실제 사건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현장체험을 통해 실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과 연계한 현장학습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실제 사건의 법률상담 등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법률전문가로서의 소양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법조윤리 및 리걸클리닉 활동을 수행하도록 적절한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률정보조사, 법문서 작성, 리걸클리닉, 실습과정, 리걸클리닉 및 실습과정의 공익성을 평가요소로 한다.

7. 교육과정 중 국제화 및 특성화 평가기준

국제화 및 특성화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지향하는 과제로, 사법시험제도와 차별성을 갖는다.

이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은 국제화 소양의 함양이라는 교육목적 달성에 적합하도록 해외 교육기관과 연계하는 국제화 프로그램을 적절히 운영해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 전체의 균형을 고려하여 특성화 프로그램을 적절히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교원의 역량이나 현장학습과의 연계성 등을 갖추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화, 특성화를 평가요소로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제3주기 평가기준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간의 괴리

대한변호사협회는 2021년 2월 ‘2020년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여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 공문으로 송부한 바 있다. 이 때 대한변협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평점만을 전달하고, 전체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하반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졸업사정의 엄격성을 요구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순위와 점수를 통지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순위의 공개를 의미하며, 향후 대중에게 순위를 공개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공문에 [붙임 3]으로 전달된 2021 법학전문대학원 순위를 보면, 순위 산정방식을 “역대 변호사시험 응시자대비 합격률 2/3 적용, 2020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설문조사 평균평점 1/3 적용하여 합산”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순위 산정방식은 교육과정 평가기준에 부합하는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제, 실무과목, 국제화 및 특성화를 3대 축으로 한다. 특히,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학부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는 교육과정 편제의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큰 목표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 산정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대 변호사시험 응시자대비 합격률이라는 점에서 이는 다양한 전공을 토대로 하는 전문법조인 양성, 국제화 및 특성화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와는 괴리가 있다.

순위 산정방식 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설문조사 평균평점은 그 편차가 크지 않은 반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그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각 학교의 기존의 위상에 의한 서열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할당제도 역시 변호사 시험 합격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합격률을 중요한 요소로 하는 순위 산정방식은 사법시험 제도와 대학서열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의 취지와 큰 괴리가 있다. 또한, 지역을 대표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역인재 할당제도를 이행하면서 지역인재할당 의무가 없는 대학과 비교할 때 합격률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는 지방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민사법, 형사법, 공법으로 구성되는 기본법률 과목들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좌우하는 형편을 고려하면, 교육과정 평가의 주요 축인 전문법조인 양성, 국제화 및 특성화의 평가요소는 그 중요성이 간과될 수밖에 없다.

이는 그렇잖아도 고사위기에 있는 전문적 법률과목(선택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학습을 저해하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전문적 법률과목 미개설 법학전문대학원(응답거부 제외 24개 법전원 중)은 아래 표와 같다.

교과목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식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미개설 법전원의 수	1개교	2개교	0개교	5개교	1개교	4개교	4개교
3개 미만 개설 법전원의 수	9개교	19개교	10개교	11개교	11개교	16개교	22개교

위의 표와 같이 전문적 법률과목의 개설은 매우 저조한 형편이다. 이는 전문적 법률과목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인데, 조세법, 경제법과 같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법조인 양성 수요가 큰 분야조차도 4~5개교가 과목을 개설하지 않고 있다. 최근 ESG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환경법 역시 4개교가 개설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전문법조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준에 대한 객관적 지표는 정립되지 않았으나- 최소 3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3과목 미만을 개설하는 법전원을 수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조세법, 지식재산권법, 경제법 등 전문적 법조인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큰 과목들조차 10개교 이상에서 3개 미만으로 개설되고 있으며, 국제거래법과 환경법은 20개교 정도가 3과목 미만으로 개설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저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토대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순위 발표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법학전문대학원 순위 발표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변호사시험 합격률만을 지상과제로 인식하게 할 것이고, 변호사시험 합격률 저하로 수험생들인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물론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기본법 위주의 강의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평가는 결국 전문법조인 양성, 국제화된 법조인 양성, 특성화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에 의한 공식적인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 더 나아가 법에 의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의 주관기관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의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라는 점을 생각하면, 동일한 기관에서 이중의 잣대로 평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평가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평가를 시행한다(법 제 27조 이하). 즉,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에 의해 공식적인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순위평가는 결과적으로 자신이 직접 제시하고 있는 평가기준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를 일원화시켜야 하며, 그 평가기준은 법에 의해 설립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시되어야 하며,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의적인 순위평가와 발표는 지양해야 마땅하다.



교육과정 평가 관련 법학전문대학원의 의견과 평가요소의 개선방향

아래는 제3주기 평가기준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견수렴 결과 및 「연구책임자 송양호(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평가기준 개선방안 연구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개선방안 연구(1차 보고), 2021. 2.」를 기초로, 평가기준 및 평가요소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 기술한다.

1. 교육과정 편제 관련

(1) 현행 평가기준

- 평가기준 4.2.1 교육과정의 체계성, 4.2.2. 교육과정의 자율성, 4.2.3 교육과정편제의 적절성에서는 다음과 같은 매우 방대한 자료의 작성 및 비치를 요구하고 있음. 그 대상은 전체 개설교과목표, 전공영역별 및 특성화 주제별 과목체계도, 평가대상 기간 중 각 학기별 수강신청 내역 및 현황, 개설된 각 과목별 강의계획서, 개설된 각 과목별 학생들의 강의평가서, 교육과정 MAP 등임
- 평가기준 4.2.2. 교육과정의 자율성에서는 법전원이 “대학교 본부의 승인 없이 독자적, 자율적으로 교과목을 개설 및 폐지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평가기준 4.2.3 교육과정 편제의 적절성에서는 법률기본과목 개설의 적절성, 융·결합과목의 충분성 및 충실성, 실무과목 개설운영의 적정성, 외국어강의 교과목의 개설운영의 적절성 등을 요구하고 있음

(2) 현황과 문제점

- 교육과정의 체계성, 자율성, 적절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평가를 받기 위해 작성, 제출, 비치해야 하는 자료가 지나치게 방대하여 준비과정에서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존재함
- 본부 승인 없이 교과목을 개설 및 폐지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평가기준 4.2.2)은 각 대학교의 규정과 현실에 부합하지 않음.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과목의 개설과 폐지는 학칙 상 대학본부(총장)의 권한사항이고, 교육부의 행정감독도 교과목 개설과 폐지는 대학본부의 권한사항임을 당연한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위 요구는 매우 비현실적이고 이를 충족하려면 평가보고서에 허위 기재를 유도하게 됨
- 학년도 기준으로 융·결합 과목을 5개 이상 개설되도록 요구하고 있어(평가요소 4.2.3(2) 관련 해석지침), 과목명이 쓸데없이 난삽해지고 오히려 학생들에 대한 충실한 교육을 저해하며, 소규모 법전원의 경우 수강정원을 채우는데 문제가 있음
- 기초법학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부족함. 평가기준 4.2.1 (5)에 대한 해석지침에서는 “기초법학 과목은 법철학, 법제사 등 법학의 기초에 관한 과목을 말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막상 해당 평가기준은 “공법분야, 민사법 분야, 형사법 분야별 이론교과목, 연습 교과목, 실무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편성하여 적절한 시점에 개설하고 있으며, 선택과목의 개설은 다양하다”라고 정할 뿐 기초법학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음.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에서 기초법학 강좌가 개설되지 않거나 폐강되어 기초법학의 고사가 우려되고 있음

(3) 단기적 개선방안

- 교육과정에 관한 MAP은 이번 3주기 평가에서는 제외하거나 대폭 간소화된 방식으로 반영
- 교과목 개설과 폐지에 관하여 법전원의 자율성이 사실상 존중되면 충분한 것으로 하고, ‘본부의 승인이 필요 없을 것’까지 요구하는 조항은 삭제함

(4) 중장기적 개선방안

- 장기적으로는 평가를 대비하여 새로 작성해야 하는 자료의 수와 종류를 대폭 줄이고 교육과정에 관하여 이미 존재하는 현황자료 위주로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
- 교육과정에 대한 사전적 내용규제는 학문과 교육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며 획일적 교육과정을 강요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 법전원에서 어떤 과목을 어떤 순서로 가르치는가에 관하여 MAP 등 일률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는 지양하여야 함

- 즉 교육과정의 체계성과 적절성에 관하여는 외부 평가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각 법전원의 자율공시에 맡기는 등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로스쿨 졸업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각 법전원의 특성과 장단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보와 평판이 교환되고 있고, 학생들은 이에 기초하여 자신에게 맞는 법전원을 지원하는 등 법전원 간의 경쟁은 이미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굳이 외부기관이 개입하여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할 필요가 없음
- 융·결합 과목의 개설요건은 없애거나, 각 법전원의 특성화 분야에 한하여 가점요소 정도로만 축소하여 요구함이 타당함
- 법철학, 법제사 등 기초법학의 사멸을 막기 위해 교육과정에 관한 평가기준에 기초법학의 개설에 관하여 최소한의 언급을 하고, 선택적 필수화 또는 가점요소화 등의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검토

- 이와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취합한 ‘제3주기 학교의견’에도 유사한 취지의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음
 - 기초법학과목의 위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융결합과목은 법학전문대학원 별 정원에 따라 과목 개설 수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음

2. 교육과정 MAP

(1) 현행 평가기준

- 평가기준 4.1.1.에서는 ‘교육성과 목표의 적절성’이란 표제 하에 교육과정 Map을 평가자료로 요구하고 있고, 평가기준 5.1. 및 5.2에서도 항목마다 교육과정 Map을 평가자료로 요구하고 있음

(2) 현황과 문제점

- 교육과정 Map은 공법분야, 민사법분야, 형사법분야의 교과목을 임의로 상정하고, 각 과목별로 다루어야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열거한 뒤, 각각의 성취도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 Map이 제시하고 있는 수업모형은 지나치게 세부적인 교육목표를 제시하면서 그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교과목 선정 및 그 내용결정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며, 과도한 부담을 야기함

- 이는 초등교육에 요구되는 교육과정보다도 더 획일적인 기준을 대학원 교육에 요구하는 것으로서 고등전문가 교육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
- 이 서식에 따라 Map을 작성하게 한다면 교수와 직원들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한편, 실제 교육효과와는 전혀 무관한 무의미한 문서만 양산하게 될 것임

(3) 단기적 개선방안

- 현재 마련된 Map 서식은 법전원의 교육현황 및 취지와 동떨어져 있으므로 일단 시행을 유보함
- 전면 시행유보의 대안으로 현재 마련된 Map 서식을 대폭 완화하여 학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대안적 모델 내지 서식을 개발함
- 예컨대 현행 평가기준 부록 3의 분야별 교육과정 Map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변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모든 교과목에 적용하지 말고, 예컨대 공법 분야 3과목(헌법 1과목, 행정법 1과목, 연습/실무 1과목), 민사법 분야 4과목(민법 1과목, 민사소송법 1과목, 상법 1과목, 연습/실무 1과목), 형사법 분야 3과목(형법 1과목, 형사소송법 1과목, 연습/실무 1과목)을 선정하여 그것만을 대상으로 함
 - 2-1-3, 3-1-3, 4-1-3과 같은 교과목 분류표는 위와 같이 대상과목을 선정하면 의미가 없으므로 삭제함
 - 2-1-4, 3-1-4, 4-1-4의 학업성취도 수준은 각 과목별로 성과달성목표 별로 입문-중급-고급을 나누고 있는데, 그와 같은 일률적 분류는 가능하지도 않고 요식행위로 흐를 우려가 크므로, 해당 성과달성목표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Y/N로 구분함이 타당함 (그 경우 2-1-2, 3-1-2, 4-1-2와 동일해지므로 둘 중 하나를 삭제함이 타당함)
 - 2-1-5, 3-1-5, 4-1-5의 수업모형에서는 각 수업별로 각 성과달성목표에 대하여 수업모형, 교수자료, 학습자료, 교수에 대한 평가자료, 학생에 대한 평가자료 등을 일일이 기재하고 해당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강의의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는 강의계획서, 성적표, 학생들의 교수평가 자료로 충분하므로 이들 자료를 활용하도록 함
 - 법정실무과목 및 전문법 분야는 각 법전원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그 내용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Map을 통한 일률적 규제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대상에서 제외함
- * 이와 같은 개선방안은 절충적 입장에서 개진될 수 있으나, 그렇잖아도 강의부담이 큰 기본법 교수들의 업무부담을 가중하게 되고, 교원의 자율성 및 법전원 별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중장기적 개선방안

-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외부 평가기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Map과 같은 교육과정 및 개별 교과목에 관한 획일적 기준은 요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5) 검토

- 21년 수집된 법전원들의 건의사항에도 Map에 대한 다수의 요구들이 분출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교수의 교수권과 학생의 수업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많은 서류를 요구하여 행정부담”으로 작용하며, 결국 교육효과가 아닌 평가기준 충족을 위해 교육과정이 운영될 우려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대한변협 법전원 제3주기 평가기준(교육성과) 관련안내 - 법전원협의회 -222(2020.05.25.)]에서는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일치하여 Map 평가에 응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음. 이로 인해 대한변호사협회의 평가위원회와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갈등이 초래되고 있음
- Map은 강의계획서와 중복되는 자료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Map에 의한 평가는 이미 학생들의 강의만족도 등에 의해 평가되고 있음

3. 실무과목(리걸클리닉, 실습 등) 교육 관련**(1) 현행 평가기준**

- 평가기준 4.4.1.에서는 법률정보조사에 관한 강의내용의 충실성, 피드백 시스템의 활용, 소프트웨어 및 Web DB 등 교육 인프라의 구축 등을 요구하고 있음
- 평가기준 4.4.2.에서는 법문서 작성 과목 운영의 적절성, 강의규모의 적정성, 선수과목과의 연계성, 피드백 시스템 등을 요구하고 있음
- 평가기준 4.4.3.에서는 리걸클리닉의 개설, 내용구성, 운영비 확보, 실무실습 실적, 피드백 시스템, 자료집 발간 등을 요구하고 있음
- 평가기준 4.4.4.에서는 실습과정의 적정성, 유기적 연계성, 외부기관의 적절성과 다양성, 지침서의 구비와 적정성, 교육 인프라의 구축, 피드백 시스템 등을 요구하고 있음
- 평가기준 4.4.5.에서는 리걸클리닉 및 실습과정의 적합성, 사회봉사 기회의 제공, 학생의 실질적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음

(2) 현황과 문제점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리걸클리닉 및 법무실습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받고 있음
- 실습과정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 전임교직원 등의 인프라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4.4.4.(5)) 소규모 법전원에서 전담조직과 인원을 갖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 리걸클리닉을 활성화하려면 변호사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전임교원이 배치되어야 하지만, 현재 전임교원의 변호사업무 수행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리걸클리닉 활성화에 지장이 있음
- 물론 전임교원 아닌 비전임교원이 변호사등록을 하고 실무를 수행하며 학생지도할 수는 있으나, 전임교원에 비해서는 교육에 대한 몰입도, 책임감, 지속성에 차이가 있으며, 소규모 법전원에서는 비용부담이 큼

(3) 단기적 개선방안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학생들에 대한 대면지도 및 학생들의 실질적 참여가 어렵거나 불가능해진 점을 고려하여, 리걸클리닉, 법무실습 등에 관한 일부 기준(예: 4.4.5(3) 학생들의 실질적 참여)에 대해서는 2020년, 2021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4) 중장기적 개선방안

- 모든 학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리걸클리닉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그 학교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실습기회를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컨대 몇 개 법전원이 공동으로 리걸클리닉을 운영하거나, 특정 주제에 관심이 있는 다수 법전원 학생들을 모아 소규모 실습프로그램의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교육효과가 높을 수도 있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실무교원이 리걸클리닉을 지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로서 등록하고 실제 법률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 법무실습,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등은 이미 법률로 수강이 의무화된 과목이므로 실제로 그 과목이 개설되어 강의가 제공되는지를 확인하면 족하고, 굳이 그 과목의 실제 운영내용과 방식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에 대한 과도한 개입임

(5) 검토

- 이와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취합한 ‘제3주기 학교의견’을 보면 실무과목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임
 - 법률정보조사의 교육 내용은 로스쿨 교육과정 상에서 자연스럽게 습득 가능한 기본적인 지식에 불과하므로, 해당 과목을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며, 필수 교과목으로 선정할 필요도 없음
 - 리걸클리닉은 미국에 비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대학의 로스쿨 현실을 고려할 때, 학교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단일화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로스쿨의 현실과 맞지 않음

- 이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활동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임

4. 실무과목(법조윤리, 모의재판) 교육성과

(1) 현행 평가기준

- 평가기준 5.2.1.에서는 법조실무 경험을 보유한 교원이 담당교원으로 참여할 것, 참고자료와 강의 계획서 등이 교육성과 달성에 부합할 것, 교과목의 시험과 토론주제 등이 교육성과 달성에 부합할 것, 외부특강 등을 실시하고 있을 것, 졸업생이 법조인으로서의 윤리적 사명감과 책무성 등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평가기준 5.2.2.에서는 모의재판의 운영, 이론과목과의 유기적 연계성, 교육성과 달성에 부합할 것, 피드백 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할 것, 졸업생이 모의재판을 통해 재판실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것 등을 요구하고, 평가자료로 모의재판 동영상을 요구하고 있음

(2) 현황과 문제점

- 평가기준에서는 “법조윤리 담당교원이 법조실무 경험을 보유한 교원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조실무 경험이 없더라도 법조윤리 분야에 관해 많은 연구실적, 자문실적 및 출제경험을 갖춘 전임교원이라면 법조윤리 과목을 담당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할 것임 → 현 기준은 이러한 법조윤리 전문가에 의한 교육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음
- 법조윤리 과목에서 전현직 법조인 등 외부특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특강을 진행하지 못한 학교가 많았고 비대면특강은 외부인사를 직접 만나는 효과가 반감되어 굳이 시행할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았음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면 모의재판 수업을 진행하기 곤란하였고, 따라서 모의재판 동영상을 촬영하기 곤란하였음
- 법정필수과목 중 법문서작성, 법무실습, 법률정보조사는 평가영역 4.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반면 법조윤리와 모의재판은 평가영역 5. 교육성과에서 다루는 것도 균형이 맞지 않음

(3) 단기적 개선방안

- 법조실무 경험이 없더라도 법조윤리 교육, 연구, 자문 경험이 충분한 교원이라면 법조윤리 과목을 강의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기준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실제 모의재판 진행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하여, 모의재판 동영상 촬영물은 제출대상 및 평가에서 제외하여야 함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법조윤리 외부특강 진행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하여, 외부특강은 고려하지 않아야 함

(4) 중장기적 개선방안

- 법조윤리와 모의재판은 이미 법률로 수강이 의무화된 과목이므로 실제로 그 과목이 개설되어 강의가 제공되는지를 확인하면 족하고, 굳이 그 과목의 실제 운영내용과 방식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에 대한 과도한 개입임
- 굳이 평가를 하더라도 법정필수과목 5개를 교육과정과 교육성과에서 나눠서 평가할 이유는 없고, 교육과정에서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합리적임

5. 국제화 교과목 및 외국어강의 개설 관련

(1) 현행 평가기준

- 평가기준 4.1.2 국제화 및 특성화 교육성과 목표
 - (1) (국제화 교육성과 목표의 적절성) 국제화 교육을 통하여 습득해야 할 지식과 역량에 대한 교육성과 목표가 적절하다.
해석지침: [평가요소 (1) 관련] 국제화 교육성과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교과목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국제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 평가기준 4.2.3 교육과정 편제의 적절성
 - (4) (외국어강의 교과목의 개설·운영) 외국어강의 교과목의 수는 적절하다.

(2) 현황과 문제점

- 학교별, 학생별로 다양한 진로 모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교, 모든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국제화 교육성과 목표”를 설정할 것으로 요구하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평가기준 4.1.2에 대한 해석지침에서 요구하는 “국제화 교육성과 목표에 부합하는 교과목”의 개념도 모호하고, 자칫 실제 교육효과와 무관한 보여주기 식의 교과목 편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모든 학교에서 외국어강의 교과목 개설을 요구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역시 학생들 및 잠재적 고용주들의 실제 수요와 부합하지 않음
- 소규모 법전원 및 졸업생들이 주로 지역사회 진출을 염두에 두는 법전원의 경우에는 외국어 강의 수요 자체가 낮아서 폐강 비율이 높고, 높은 수준의 외국어 강의 교원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음

(3) 단기적 개선방안

- 외국어 교과목에 관하여 법전원의 규모 및 특성과 상관없이 “최근 3년간 20개 교과목 이상”을 개설하도록 하는 요건은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외국어 사용만이 아닌 ‘외국법 강의를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수강신청 기간에 교과목개설 목록에 들어 있었으나 수강신청자 부족으로 폐강된 경우에는 법전원으로서의 노력을 한 것이므로 개설된 것에 준하여 취급하는 등으로 운용하는 것이 타당함

(4) 중장기적 개선방안

- 국제화 교육성과 목표 및 외국어 강의 개설 등은 (i) 아예 평가요소에서 제외하거나, (ii) 해당 학교가 국제화 관련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선택한 경우에만 평가요소로 삼거나, (iii) 정성적 가점 요소로만 다루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함

(5) 검토

- 위와 같은 개선방안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취합한 ‘3주기 학교의견’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
- 학교의 규모와 학생 수에 관계 없이 “평가 직전 최근 3년 간 20개 교과목 이상” 또는 “서로 다른 6개 교과목 이상” 개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함
- 특히, 국내 교수에게 외국어 강의를 배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법전원에 다수의 외국인 강의자를 배치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음
- 또한, 외국어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적어 개설하더라도 폐강되는 실정으므로, 변호사 시험 합격률 등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의 상황에서는 외국어 교과목 수에 대한 평가기준을 완화할 필요 있음

6. 국제화 및 특성화

(1) 현행 평가기준

- 평가기준 4.5.1.에서는 국제화 프로그램의 운영, 다른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해외연계 교육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한 조직과 예산의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음

- 평가기준 4.5.2.에서는 특성화 교육의 선택과목 수가 10개 과목 이상일 것, 개설순서와 내용의 체계성과 전문성, 현장학습과정과의 연계성, 진로결정에 대한 실질적 기여 등을 요구하고 있음

(2) 현황과 문제점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해외연계 프로그램의 운영 및 실질적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 정부 조치로 등록금 및 수업료가 장기간 동결되어 대학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대부분의 법전원에서는 예산상 제약으로 실질적인 국제화 프로그램의 운영이 매우 어려움
- 법전원 출범 당시에는 국제화 및 특성화가 이념으로 제시되었으나, 변호사시험 합격 및 실무능력 배양이라는 요구가 커지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법전원에서 국제화 및 특성화 요구는 비현실적이 되었으며, 학생들 및 (잠재적) 고용주들의 수요와도 동떨어져 있음
- 변호사시험 합격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상당수 법전원에서 특성화교육과 연계한 현장학습에 참여 하는 학생의 수도 매우 줄어들고, 학교에서 강제할 수도 없음

(3) 단기적 개선방안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국제교류가 어렵거나 불가능해진 점을 고려하여, 국제화에 관한 기준 (예: 4.5.1)은 2020년, 2021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4) 중장기적 개선방안

- 모든 학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국제화를 요구하기보다는 그 학교의 규모와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가점 요소 정도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즉 스스로 특성화 분야로 국제화를 내세운 법전원은 국제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운영하여야 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법전원에 대해서까지 이를 요구하는 것은 학생들 및 법률소비자의 수요와도 전혀 부합하지 아니함
- 특성화 과목의 개설 및 특성화와 연계된 현장실습 역시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그 법전원에 특성에 맞는 자율적 운영에 맡기고, 특성화 교육이 활성화된 법전원은 이를 자율공시하게 하여 해당 분야에 관심이 많은 지원자들이 법전원 선택 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함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변호사 연수제도 활성화 방안

이상경 원장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변호사 연수제도 활성화 방안

이상경 | 원장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 서론

법치주의 아래에서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그러한 법제도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사법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적절한 법률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유능하고 역량 있는 인적자원이 필요하다. 즉,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변호사가 있어야 하며, 이들 변호사에 대한 접근이 쉬워야 한다. 하지만, 종래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선발하는 방식으로는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요청하는 시대적 요청에 제대로 부응할 수 없었기에, 오랜 논의 끝에 정부는 2009년 교육을 통해 법률가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 함)과 변호사시험 체제를 도입했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출범한 로스쿨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체제 도입 후 해마다 배출되는 1,500명의 신규 변호사 유입으로 다양한 전공지식과 배경을 가진 변호사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법률서비스 제공 영역이 다양화되고,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야도 넓어지는 성과가 있었다. 실로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법률가로 진출함에 따라 다양하고 폭넓은 직역에서 변호사가 활동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법조인 양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를 전체 로스쿨 정원(2000명) 대비 75% 내외의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불합격자수가 누적되고 이로 인해 합격률이 응시인원 대비 50%에 머무는 수준까지 낮아졌다. 즉, 변호사시험이 회를 거듭할수록 합격률이 낮아져서 2016년 이후 사실상 응시자 2명 중 1명이 합격하는 시험이 되었다. 그 결과 로스쿨 학생들은 역량 있는 법률가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는 대신 변호사시험에 붙기 위한 공부에 몰두하게 되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다.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 아니라 선발시험으로 전락함에 따라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과목만 수강하게 되고, 특성화과목이나 전문선택과목, 또는 외국법과목의 경우 폐강이 속출하여 로스쿨 교육이 황폐화되고 있고,

재학생들이 수험법학 위주로 변호사시험에 매몰됨에 따라 로스쿨 도입취지인 다양한 전문성과 국제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도입취지는 몰각되고,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리걸 마인드를 양성하기 보다는 수험 적합한 교육에 치중하게 되는 폐단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파행적 현상은 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을 온전히 자격시험으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법에 명시된 대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취지를 고려”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고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기존 변호사 수를 고려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관리하며 통제하고 있는 정책으로 말미암은 악순환과 폐단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을 온전히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만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더불어 변호사연수를 맡고 있던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라 함)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 혹은 증원반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대한변협이 실시·관장하는 변호사연수 인원을 제한하기로 하였다가 다양한 반대의 목소리에 부딪히자 연수인원 감축을 철회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안정적인 변호사연수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사실 대한변협이 연수인원을 제한하려고 했을 때 그 대응책으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이라 함)는 진지한 논의를 거쳐 법전협 소속 로스쿨을 통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일정 인원을 대상으로 변호사연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변호사연수 기관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대한변협의 변호사연수 인원제한의 발상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볼모로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다양한 직역 진출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변호사연수기관의 다변화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기로 한다.

II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방안

1. 변호사시험제도 개선

(1) 합격률의 재조정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시험을 관장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 이때 법무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변호사시험법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동법 제10조 1항). 실제 합격자 결정과정을 보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연도 합격자 수를 심의함과 동시에 다음 연도 합격자 결정 방법을 개략적으로 정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입학 정원 대비 75%인 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전년도 합격인원,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행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새로운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의 도입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합격자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대원칙만 정한 채, 합리적인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매년 거듭되는 감축 대 증원의 논쟁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합격자수 결정에 있어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여 각자 원하는 방향이 정해진 상태에서 논의를 지속하게 된다. 여기에 각자 제안한 합격자 수를 두고 표결을 하여 결정하지만 결국은 소수 인원의 추가 합격 여부를 두고 시소게임을 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법무부는 2010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1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결정하면서, “로스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졸업생은 변호사 자격을 무난히 취득할 수 있도록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임을 밝혔다. 변호사시험 제1회 응시자의 합격률은 87.15%였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격시험과 진배없었으나, 불합격자들의 누적응시로 인하여 합격률이 제7회 시험의 경우 49.35%까지 떨어졌고, 그 이후에 합격자수 증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음에도 10회의 경우 3,155명 채점대상자 중 1,706명이 합격하여 합격률은 54.8%에 그쳤다. 이러한 수치의 변화는 변호사시험법이 밝히고 있는 ‘충실한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선발시험론’이라는 명칭을 굳이 붙이지 않더라도 사법시험과 동일한 선발시험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 변호사시험 현황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등)(단위:명)

구분	제1회 (2012)	제2회 (2013)	제3회 (2014)	제4회 (2015)	제5회 (2016)	제6회 (2017)	제7회 (2018)	제8회 (2019)	제9회 (2020)
응시자	1,665	2,046	2,292	2,561	2,864	3,110	3,240	3,330	3,316
합격자	1,451	1,538	1,550	1,565	1,581	1,600	1,599	1,691	1,768
(합격율)	(87.15%)	(75.17%)	(67.63%)	(61.11%)	(55.20%)	(51.45%)	(49.35%)	(50.78%)	(53.32%)
불합격자	214	508	742	996	1,283	1,510	1,641	1,639	1,548
합격점수	720.46	762.03	793.70	838.50	862.37	889.91	881.90	905.55	900.29

□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 60~80% 합격시 추이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1,900~1,800명 정도를 선발하면, 2026년(15회) 이후 계속 응시자 대비 합격률 80% 동일 유지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측가

능하고 지속가능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확보할 수 있다.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16회)	(17회)	(18회)	(19회)
응시자	3,316	3,171	2,900	2,600	2,411	2,282	2,240	2,264	2,290	2,307	2,315
합격자	1,768	1,903	1,957	1,885	1,868	1,826	1,792	1,812	1,832	1,846	1,852
불합격자	1,548	1,268	942	715	542	456	448	453	458	461	463
합격율	53.32	60.00	67.50	72.50	77.5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2)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의 제 조건

궁극적으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제 전제들이 미리 충족되어야 한다. 결국 자격시험화는 일정한 단계적 자격시험화라고 할 수 있다. 아래 논의되는 사항들이 준비가 되고 그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본다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는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①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방안의 일환인 교육 및 시험용 표준판례 선정 작업 추진

법률에 대한 지식과 법률가로서의 사고 능력은, 범위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통해 습득해야 할 부분과 직무교육 및 실무를 통해 습득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원론적으로 볼 때, 교육 과정에서 습득해야 하는 지식은 일반 지식 혹은 기초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며, 직무교육과 실무를 통해 익혀야 할 지식은 분야 지식 혹은 전문 지식이라고 구분해 볼 수 있다. 결국 자격시험은 법률에 대한 백과사전적 지식보다는 법률가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소양과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여러 로스쿨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로스쿨들이 동일한 교육과정을 채택하는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한다면, 자격시험에서 점검할 지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수험생들의 불필요한 노력을 줄인다는 점에서나 시험 결과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모의고사 실시나 판례집 발간과 같은 작업들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으며, 최근 법전협이 과목별 기본판례를 선정한 것은 표준화 작업의 시작으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표준화 작업은 더 체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¹⁾

② 변호사시험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선택법과목) 개선

변호사시험에서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으로 지칭되는 선택과목은 국제법·국제거래법·노동법·조세법·지적재산권법·경제법·환경법이다. 수험생은 이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사례형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는 과거 사법시험 체제를 부정하기 위한 명분을 돕는 것이기도 하다. 법학전

1) 2019년도에는 민법, 형법, 그리고 2020년도에는 헌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사소송법 5개 과목 표준 판례 선정 연구수행 (연구수행학회: 한국공법학회 민사소송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 연구책임자: 서울대 이원우교수 서울대 정선주교수 고려대 유진희교수 경북대김 성룡교수).

문대학원을 설치할 때부터 선택과목의 존재는 기존의 사법시험 체제보다 전문분야에 대한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과거 사법시험에서 선택형이던 선택과목이 변호사시험에 이르러 사례형으로 바뀐 것 외에는 의의가 거의 없다.

선택과목은 공법·형사법·민사법의 배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배점을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과락만 면하면 되는 과목이 된 지 오래다. 선택과목에 대한 로스쿨 수업 역시 극히 일부의 학생들만 수강하고, 변호사시험 준비는 시험범위가 적고 과락을 면하기 위한 과목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며,²⁾ 단기간에 학원 강의나 요약된 교재 또는 학교에서 개설하는 특강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현실이다. 다양한 전공 출신을 법학전문대학원 선발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면, 그 다양한 전공 출신자들이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선택과목을 변호사시험과 관련하여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바,³⁾ 필자는 결론적으로는 로스쿨의 교육정상화를 위해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에 대한 시험을 폐지하고 ‘학점 이수제’로 대체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학점 이수제는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그것으로 시험에 갈음하는 방안을 말한다.

③ 응시횟수 제한 철폐

‘오탈자’라는 신조어로 명명되는 변호사시험 탈락자가 탄생한 것도 5회라는 응시횟수의 제한에 따른 큰 부작용이다.⁴⁾ 오탈자는 자칫 영원한 사회적 낙오자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응시횟수제한에 대해 헌법소원이 줄을 잇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확고부동한 상태이다.⁵⁾ 현행 응시제한 아래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응시횟수의 기회를 상실하거나 응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조차도 구제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참으로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학부 4년을 공부하고 로스쿨을 3년 동안 이수한 연후에 5년 동안 군복무를 제외하고는⁶⁾ 어떠한 사유로든 합격하지 못하게 되면 물경 12년이라는 장구한 시간동안을 그저 공중에 날리고 허비한 시간이 되어 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인적 자원의 낭비이자 국력의 낭비라고 할 수 있다.

- 2) 변호사시험 응시현황 : (국제거래법) 43.3%, (환경법) 27.8%, (노동법) 14.1%, (경제법) 7%, (국제법) 3.3%, (지적재산권법) 2.6%, (조세법) 2%
- 3) 명순구/홍영기,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18년 연구보고서, 40면 이하 참조.
- 4) 「변호사법」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 5) 현재 2016. 9. 29. 2016헌마47 등, 판례집 28-2상, 553; 1.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응시횟수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취득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이 변호사시험에 5회 모두 불합격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응시 기회 제한이 없는 의사·약사 등의 다른 자격시험 및 사법시험 응시자들과 비교하여 위 조항이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3. 병역의무의 이행만을 응시기회제한의 예외로 인정하는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제2항에 대하여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한지 여부(소극)
- 6) 「변호사법」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고시 낭인과 같이 로스쿨 낭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명분이든 어떠한 명분이든 12년간이라는 귀한 시간이 고스란히 ‘무’로 바뀌게 되고야 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를 위해서는 우선 합격률을 일정기간 동안 높여서 점차 이탈자의 숫자를 감소시킨 연후에 일정한 비율인 80%대의 합격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응시횟수 제한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④ 자격시험화를 위한 선택형 시험 과목 개편 등

법무부는 이미 2019년에 선택형 시험 과목을 헌법, 민법, 형법 3과목으로 축소하는 법령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하였고 아래와 같이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으나 구체적인 추진 상황은 아직도 물밑에 있을 뿐 언제 빛을 보게 될지 모르겠다. 더군다나 선택형 시험 과목 개편의 방향은 기본지식 법지식의 측정을 위한 시험으로 바꾸는 쪽으로, 그리고 수험부담을 경감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현재 공법/형사법/민사법 총점은 유지하면서 행정법, 형사소송법, 상법, 민사소송법의 경우만 선택형 필기시험을 폐지하는 것이므로, 조삼모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해 현행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⁷⁾에 대한 추가적인 손질이 필요하며,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의 정비 등을 위해 이에 대한 합의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 아래의 표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선택형 시험과목 폐지의 내용을 현행법의 규정과 대비하여 정리한 것이다.

□ 선택형 시험과목 개편 관련 현행법과 개정안의 대비

과 목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현	개정안	현	개정안	
공법 (400)	헌법	100(40문)	50(20문)	200(2문)	250(2문)	100(1문)
	행정법		-			
형사법 (400)	형법	100(40문)	50(20문)	200(2문)	250(2문)	100(1문)
	형소법		-			
민사법 (700)	민법	175(70문)	87.5(35문)	350(3문)	437.5(3문)	175(1문)
	민소법		-			
	상법		-			
선택과목(160)		-	-	160(2문)	160(2문)	-
총점(1,660)		375	187.5	910	1097.5	375

7) '20.10.16, 정부제출안을 말한다.

2. 자격시험화를 위한 추가적 제도 개선 논의

(1) 시험방식, 시험시행 횟수 등

컴퓨터 활용 답안작성, 1년에 2회의 변호사시험 실시 등 추가 개선방안에 대해 계속 연구하고,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에 관한 다양한 요구에 항상 열린 자세로 소통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1년에 2회 변호사시험을 실시는 결국 합격자수의 문제와 직결되므로 궁극적으로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변화시험을 완전 자격시험화 하는 경우 변호사시험의 연간 시행횟수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물론 완전 자격시험화는 경우 시험을 수기형에서 컴퓨터 활용 답안작성 방법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⁸⁾ 수기형으로 작성하는 경우 기본적인 법지식의 측정이라는 본령에서 벗어나 글씨 평가라는 불필요한 평가가 채점에 잠재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시험제도 아래에서도 답안의 내용을 기준으로 엄정하게 답안채점을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채점위원이 알아보기 힘든 글씨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드는 노고를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수험생의 필기 부담을 경감시키는 편의성의 입장에서 볼 때 컴퓨터 활용 답안작성 방법을 조속히 채택해야 한다.⁹⁾

(2) 변호사시험 출제업무 위탁(시험관리 주체의 변경의 필요성)

변호사시험의 출제업무를 현재는 법무부와 주관하고 있는데,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출제 및 문제관리를 담당하는 상설조직을 갖추어, 출제업무의 안정성, 타당성, 전문성,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법무부가 시험출제관리를 하는 경우 주된 출제위원인 교수들에 대한 정보 확보 및 장악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최적의 출제위원 선정, 비밀관리, 출제수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를 위한 새로운 정부조직의 신설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다른 자격시험과 마찬가지로, 외부의 민간기구에 위탁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및 법학적성시험 출제 경험과 전문적 출제위원 구성이 가능한 법전협이 현실적으로 출제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최적의 기관이라고 보여지며, 출제업무 위탁시 다양한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첫째, 기본적인 법지식의 측정이라는 완전 자격시험화를 위해서는 법전협이 출제업무를 주관하여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를 실현하고, 출제가이드라인을 정해 로스쿨 교육과 출제를 연계한다면 로스쿨 교육정상화에도 당연히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전국 로스쿨을 회원교로 하여 구성된 법전협은 최적의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 위촉, 출제방향 및

8)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무부장관 면담 참고자료 (2021).

9) 법무부도 18.11.28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발표하였고, 2021년 중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모의 프로그램 개발, 법제도 개선, 실제 프로그램 개발, 모의시험 실시 등을 거쳐 5년 내에 도입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디지털 시대에 응시자의 필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개발기간을 단축하여 2년 이내로 앞당겨 시행될 필요가 있다.

기준 연구, 문제은행 입고 및 관리, 기출문제 검증평가 등을 통해 변호사시험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셋째, 법전협이 출제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교육과 연계된 출제, 안정적인 문제은행 관리를 통해 유출시비 등을 차단하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수험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3. 변호사수 제한(공급제한) 정책의 논거와 문제점

(1) 기존 변호사의 소득 보전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에 대한 논의는 변호사수의 적정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 자격자의 공급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변호사들의 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4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보고서는 “변호사가 전문 인력으로서 의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등과 비슷한 수준인 월 500만 원의 순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당시 변호사의 공급은 지나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¹¹⁾ 여기에 근거해서 동 보고서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당시의 1,000명보다 더 적은 700명이 적당하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또 다른 적정 변호사의 연구에서도 현재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변호사 공급을 “적정 수준”으로 설정한 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²⁾

여기서 문제는 변호사 숫자를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을 배제한 채 공급자인 변호사들의 이해에 따라 예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다. 변호사의 적정 수익을 이유로 신규 변호사의 배출 숫자를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의 공익적 기능, 법조기득권을 감안하더라도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에 배치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간한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단독이나 소액사건의 수임률이 높아져 국민들이 이전에 비해 훨씬 다양한 사건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받게 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연 평균 수임사건수의 감소(2003년 38.8건에서 2013년 24건)를 이유로 변호사들이 수임하는 사건의 소가가 낮아지고 있음에도 사건 수는 줄어들고 있어 박리다매조차 가능하지 않은 현실이라고 기술하고 있다.¹³⁾

그런데 본래 수요·공급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s)에 의해 시장이 움직일 때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변호사 직역의 경우 매우 어려운 종전의 사법시험과

10) 변호사시험 출제업무 위탁을 위해서는 ① 변호사시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개정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11) 서울지방변호사회,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 2004, 80-92면.

12) 변환봉/김형석/이민/최승재,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 법률신문사, 2015, 209, 290면.

13) 이승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를 위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제도의 개선방안,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19년), 18면 이하 참조.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조정 등을 통해 공급을 제한하여 이른바 공급독점의 진입장벽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기존의 변호사는 당연히 계속적인 이윤과 사회적 지위 유지를 위해 이러한 장벽을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이론에 따르면, 각 지역마다 신규 공급자가 생길수록 기존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변호사만 기존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근간을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오히려 Say's law라고 하는 공급법칙에 대해서도 기대를 가질 필요가 있다. 공급은 결국 수요를 창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서비스는 공공재로서 국가는 무제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가에 대한 부분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공익인 국민의 관점을 고려하는 이익형량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민 모두가 합리적인 수입료로 법률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과 변호사의 적정소득 보장이라는 사익의 형량 중에서 공익인 국민의 관점에 비중을 두어 형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사익의 형량을 통해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후수단은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신규 진입 규제책이라는 강수를 두는 것은 최후수단의 억제 차원에서 정당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진입장벽을 세울 일이 아니라, 기존 법률 시장의 다변화와 공공영역에서 법조지역의 확대방안 등을 통해 충분한 수요를 일으키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법조전문인력의 질 향상

변호사 수를 제한하고 이를 통해 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또 다른 주장의 논거는 변호사 수의 제한이 법률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가 법원과 당사자로부터 독립하여 그 사명을 완수하고 비윤리적 이거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적정수입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사 수를 제한하여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법조전문인력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능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방법이라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정부의 변호사 자격자 통제를 통해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우리나라 법률서비스의 질이 제고되었다는 증거는 제시된 적이 없다. 지금까지 공급 통제 주장자들은 공급 통제를 제거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근거로 공급통제 정책을 정당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법조전문인력이 높은 수준의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진흥정책과 규제 정책을 포함해서 말이다. 다른 정책 수단이나 대안의 제시에 앞서 공급통제를 내세우는 것은 편협한 시각에 불과하다.¹⁴⁾

14) 오수근, 김두열, 이승준, 변호사시험의 완전자격시험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삼영문화사(2020), 52면 참조.

(3) 유사 법조지역의 존재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변호사 수는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이는 세계 여러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2020 법무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우리나라가 경제규모나 인구 대비로 변호사 인력의 규모가 크게 낮은 수준임을 제시하였다.

□ 2018년 기준 주요국 변호사 규모(단위: 명)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변호사 수	1,338,678	209,464	66,958	165,855	40,066	25,383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	40.85	31.20	10.30	19.95	3.15	6.20

변호사 공급제한 입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 변호사 외의 다양한 법조전문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나라의 법조전문인력공급이 낮은 수준이 아니므로, 현재 수준에서 변호사 공급을 동결하거나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한국에서 사실상 변호사의 업무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 관세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공인중개사 등 소위 법조인접직역 종사자의 수는 2014년 기준 101,128명으로 파악되고, 위 법조인접직역 종사자의 수를 포함한다면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422명으로 영국이나 독일보다 오히려 적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¹⁵⁾

해방 이후 최근까지 변호사의 공급을 극도로 통제해 왔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에 향유할 수 없었는데,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변호사 공급정상화를 통해 해결하는 대신 새로운 직역을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한 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직역들의 경우는 공무원 퇴직 후 자동자격부여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통해 소비자들의 후생을 제공한다는 자격제도 본연의 원리와는 거리가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결국 유사 법조지역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통폐합될 수밖에 없다. 어느 국민이 같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변호사에게 업무를 위임하지 않고 유사법조지역에 의존하겠는가. 결국 이것 또한 법조지역과 유사법조지역간의 자유경쟁, 혹은 완전경쟁 체제를 통하여 해소될 문제이므로 변호사 공급제한 정책의 정당화 논거가 될 수 없다.

(4) 법조 직역 확대의 한계

법조 직역 확대의 한계를 대변하는 입장은 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사 공급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주장한다.

15) 변환봉/김형석/이민/최승재,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 법률신문사, 2015, 92면.

그러나 “포화상태”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보다 변호사 공급이 늘어날 경우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하지만 공급이 늘어날 경우에는 변호사의 수입이나 임금이 하락하게 되고, 이것은 새로운 수요를 만들게 되어 일자리를 얻게 된다. 또한 변호사 공급 증원에 비해 변호사들의 일자리가 충분히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률이나 일반적인 취업률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들의 취업률이 크게 낮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

(5) 기타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감소하고 총인구 규모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변호사 수자를 이러한 변화에 연동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2020 법무부 용역 보고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정함에 있어서 장기적인 인구규모 변동 추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러한 주장은 기본적으로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라는 기본 원리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자격시험은 자격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것을 통해 변호사 공급을 조절하는 것은 자격시험의 기본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률서비스는 경제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분쟁을 해결해 줌으로써 경제성장을 보다 촉진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인구 규모나 경제 규모 축소를 근거로 법조전문인력공급을 통제하는 것은 경제 성장에 치명적인 걸림돌을 만드는 일일 수 있다.

더불어 「2020 법무부 용역보고서」의 모의실험 결과는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변호사 인력을 통제할 경우, 인구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수 부족 문제는 지속될 것임을 보여준다. 즉 연간 변호사 자격자를 1,500명 추가로 배출하는 현 체제가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인구규모가 감소하고 GDP 성장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더라도 2050년까지도 우리나라의 변호사 수는 경제나 인구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된다.

4. 자격시험화의 연차적 접근의 필요성

변호사 자격 부여에 필요한 역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 변호사시험의 범위와 형식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고, 로스쿨 교육에서 어떤 내용의 실무교육을 해야 하는지, 또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실무교육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변호사 시험을 출제하면서 몇 점을 받으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변호사시험 결과를 놓고 몇 점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합격선 인지를 고민하지

않는다. 변호사시험에서 자격시험의 원리에 맞게 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합격자 결정방법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변호사시험을 온전하게 자격시험으로 시행하기 위해 연차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합격선 결정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함이다.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변호사시험은 준거참조검사(Criterion-referenced Test)가 되어야 한다. 이에 반해 상대적 서열에 따라 일정 비율을 합격자로 결정하는 방식을 규준참조검사(Norm-referenced Test)라고 한다. 준거참조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준거설정(Standard Setting)이 필요하다. 준거설정이란 준거에 비추어 검사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분할점수(Cutoff Score), 즉,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점수를 결정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응시생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려면 해당 시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몇 점을 기준선으로 할지 정하는 것이 준거설정이다.¹⁶⁾ 준거설정 방식에 따라서는 합격선을 미리 정하고 문항 출제를 그 합격선에 맞추거나 ('고정 분할점수 방식'), 문항을 출제하고 합격선을 정해야 한다('변동 분할점수 방식'). 의사국가시험의 필기시험은 전자의 방식으로 하고 실기시험은 후자의 방식으로 하고 있다. 어느 방법을 택하든지 출제자가 문항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난이도를 추정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능력은 경험을 통해서 배양되므로 전면 실시 전에 경험 축적이 필요하다.

둘째 문항개발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평가항목과 목표가 정해지면 이에 맞는 문항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 작업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전국적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자원에 제한이 있고 예산에도 제약이 있다. 또 출제된 문항에 대한 질적 양적 검토에도 시간이 걸린다. 적정 배수의 문제은행을 구축하는데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교육현장의 변화에 시간이 걸린다. 자격부여를 위한 합격선은 로스쿨에서 학습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로스쿨에서의 교육과 연계된다.¹⁷⁾ 평가와 교육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의 평가 목표와 로스쿨의 교육목표가 공조될 필요가 있다. 교육목표가 교육현장에서 구현되는데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평가 항목과 목표가 정해지고 이를 기초로 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 교육현장에서 적용되기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16) 오수근, 김두열, 이승준, 변호사시험의 완전자격시험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삼영문화사(2020), 109면, 125면 참조 (박찬호, 준거참조검사로서의 변호사시험과 준거설정).

17) 오수근, 김두열, 이승준, 변호사시험의 완전자격시험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삼영문화사(2020), 110면



변호사연수제도의 활성화 방안

1. 서언

변호사법은 6개월간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다.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배출을 앞두고 국회 법조인력양성소위원회는 약 1년간 연구 검토 결과,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의 상황이 졸업 후 바로 변호사로 단독 수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한 실무수습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1년간 실무수습을 받도록 하는 안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제안하였다. 그러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1년이라는 실무수습기간은 너무 길다는 판단 하에 그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여 현행 실무수습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고, 이 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었다. 실무수습 제도의 법적 근거인 변호사법 제21조의2의 입법취지를 보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되려면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도록 하여 21세기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고,”라고 되어있다. 즉, “실무수습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국민에 대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보다 상세한 입법의 목적은 2011. 4. 작성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544호, 2007. 7. 27. 공포, 9. 28. 시행)으로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곧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6개월의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를 받도록 하여 21세기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고,”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결국 실무수습 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곧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¹⁸⁾ 그러므로 실무수습 제도는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실력이 부족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평가 때문에 도입된 것은 아니다. 2012년에 최초로 시행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개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급하게 실무수습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¹⁹⁾ 헌법재판소는 6개월 실무수습 제도가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

18) 권재열, 정형근, 윤승영, 법학전문대학원 주요 제도 개선, 법전형보고서 (2021), 50면 이하 참조.

19) 국회입법조사처(심정희·백상준 현안보고서),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에 대한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향」, 9면.

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²⁰⁾

2. 대한변협의 변호사연수²¹⁾

대한변협의 의무연수 프로그램을 보면, 3개월간은 강의교육, 1개월간은 모의기록 연습, 2개월간은 현장연수를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3개월의 강의교육은 출석강의와 과제 수행으로 학점을 이수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강의일정을 보면, 법률문장론, 보전처분, 노동소송, 형사변호실무, 민사집행, 행정쟁송실무, 가사소송, 손해배상, 공정거래, 법률사무소 운영, 엔터테인먼트법 등과 같은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이런 연수 프로그램에 개설된 과목은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로스쿨 교육과정 중에 개설된 것이다. 25개의 법학전문대학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연수 프로그램이라고 하여 전혀 새로운 교과목을 개설하는데 한계가 있다. 실무수습 중인 변호사는 이러한 과목들이 필요하여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실습할 법률사무소사기관을 구하지 못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수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처음에는 500~600여명이 의무연수에 참가하였다가 6개월 후 연수교육을 수료할 때에는 200여명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의무연수에 참여한 인원을 보면,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개시 당시 436명(수료자 158명),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648명(수료자 325명),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94명(수료 238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13명(175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30명(수료자 177명),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60명(수료자 219명),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606명(수료자195명)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료를 보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실무수습을 법률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대한변협의 의무연수에 참가하는 변호사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대한변협의 연수과정 강의를 실제로 담당하였던 변호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제 변호사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면 좋겠다.”라는 지적이 의무연수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다. 그 때문에 대한변협사법회의의 의무연수 프로그램을 현재처럼 계속 운영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면 합격자들은 곧바로 취업처 또는 실습할 법률사무소를

20) 헌재 2013. 10. 24. 2012헌마480; 【결정요지】

1. 심판대상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에게 본격적이고 실질적인 실무수습의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2012년 처음 실시된 의무중사 또는 의무연수는 준비의 미비, 감독 기능의 소홀, 법조기관 간의 협조 미흡 등으로 시행착오가 많았으나, 대한변협사법회의 연수에도 법무법인 위탁이 가능하고,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소사기관을 지원하거나, 개선, 시정 명령을 하도록 하여 실무수습의 내용을 담보할 제도들도 마련되었다. 또한 의무연수 또는 의무중사의 선택권 보장, 대상기관의 확대, 기간통산제도 등을 통해 실무수습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피해 최소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실무교육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능력을 향상한다는 점에서 법익 균형성도 인정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 법률사무소사기관 취업자와 미취업자 사이의 급여 여부나 실무 수습의 내용과 범위 등의 차이는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선택, 능력, 기회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사실적 차이에 불과할 뿐이다. 사법연수생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검사직무대리와 국선변호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차이 역시 전문가 양성과정에서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어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차별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1) 권재열, 정형근, 윤승영, 법학전문대학원 주요 제도 개선, 법전협보고서 (2021), 61-63면에서 발췌.

구하려고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무연수가 시작되는 5월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연수에 참가할 수밖에 없다. 현재 진행 중인 연수내용도 상당히 훌륭하지만, 대형 강의실에서 수백 명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의 한계도 분명하다. 결국 변호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장실습이라서 의무연수에 참여한 자 전원을 법률사무소로 들어가도록 주선해 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의무연수 프로그램 중에는 현장연수라는 이름으로 2개월 간 관리지도관의 관리·감독 하에 현장연수를 하며, 해당 활동을 기록한 현장연수일지를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학점을 인정받고 있기는 하다. 이처럼 2개월을 현장연수로 시행하는 것을 6개월로 연장하여 의무연수에 참여한 모든 변호사들이 법률사무소에서 실습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법률사무소에서 이미 뽑아 놓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를 받는 변호사들 사이에 공존이 가져올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무수습의 효과도 당사자 스스로 참여의지가 있을 때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자발적으로 연수교육 강의를 출석해야 하는 현행 제도는 재고해야 한다. 현장실습을 나가는 의무연수 중인 변호사 1인당 약 50만원 또는 30만원 상당을 지도비로 지급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예산지원이 있는 등으로 재정상황이 좋았을 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산지원이 중단되는 여건 속에서는 이런 형태의 연수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실습지도비를 지급하지 않고도 법률사무소에서 실습을 시켜줄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모든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 하며(변호사법 제27조), 연수교육을 받아야 의무도 있다(변호사법 제85조). 과거 사법연수생들처럼 법률사무소의 자발적인 협조 하에 실무수습을 위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현재는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는 숫자도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대한변협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무수습을 제공하는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에게는 공익활동 의무와 연수교육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미 사법연수생들이 다양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해왔던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어떤 이익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모든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을 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의 실무수습 제도가 계속적으로 존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의무연수의 개선안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3. 변호사연수 기관의 다양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실력 있는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하여 제도화된 실무수습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가장 많은 변호사가 참여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무연수는 집체 교육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해당하는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등에 위탁연수 형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변호사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6개월 동안 취급해야 하는 법률사무의 종류나 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변호사의 직역이 다양화되어 가지만, 아직까지는 송무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법정, 검찰청의 검사실, 조사실과 피고인과 피의자를 구금하는 시설인 구치소나 교도소 및 소년원을 찾아가서 그 시설 등 환경을 참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변호사가 실무수습 기간 중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여 형사사건의 변론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민사·행정사건 대리사건에서 복대리인으로 본대리인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서 변론에 참여하는 기회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변호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입법사항이라 조만간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 법률시장이 개방되고 점차 글로벌화 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송무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실효적인 실무수습을 위한 사법연수원과 같은 새로운 실무수습 기관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법과대학원을 신설한 후 신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들은 의무적으로 사법연수소에 입소하여 1년간 실무수습을 받는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그러한 실습기관의 신설도 필요하며, 실습기간은 현재처럼 6개월로 하되, 모든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²²⁾

4. 소결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호사 연수제도를 볼모로 삼아 대한변협이 연수대상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겠다고 하여, 법전협은 그 소속 25개 로스쿨을 통해 대한변협 변호사 연수를 받지 못하는 인원을 흡수하여 변호사연수를 실시할 구체적인 기획안을 만들었다. 이미 기존의 로스쿨에서 변호사연수를 실시한 경험도 있으며, 인적·물적 자원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연수를 담당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다. 변호사연수제도의 다양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법전협이 변호사연수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소요를 제기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대한변협의 연수대상인원의 제한을 발표한 덕분이다. 2021년도 변호사연수는 대한변협이 그 대상인원 제한정책을 철회하여 연수를 받지 못하는 인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향후 변호사연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연수를 시행하도록 할 필요도 있고, 벌써 그에 따라 법무부가 변호사연수기관으로 법전협을 지정하는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지만, 대한변협이 굳이 시행하던 변호사연수를 법전협에서 일부라도 인계해야하는 번다한 상황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22) 권재열, 정형근, 윤승영, 법학전문대학원 주요 제도 개선, 법전협보고서 (2021), 73-74면.

IV 결론

변호사시험은 횡수를 더해 가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노정했다. 변호사시험이 본질적으로 자격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시험으로 시행되지 않고 종래와 같은 선발시험 방식으로 시행되면서 로스쿨 재학생은 ‘장차 역량 있는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지 못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한 시험’에 붙기 위한 공부에 몰두하게 되었다. 필요한 인원 수 만큼 선발하여 사법연수원에서 교육하던 방식에서 법률가로서의 기본 소양과 자질을 갖춘 변호사의 자격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정할 때 “법조인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²³⁾ 「변호사시험법」 어디에도 그런 규정은 없다. 오히려 「변호사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²⁴⁾ 변호사시험 합격생 수를 사법시험 체제하에서와 같이 양적으로 제한하는 자세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게 된 시대적 요청이나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이미 정원을 국가가 정한 점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고,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의 근거 법률에 있는 명시적인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다. 국가가 변호사의 수를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로스쿨을 인가제로 하고 정원을 정함으로써 이미 양적 통제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더 이상의 양적 통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 변호사시험은 조속히 완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여야 하지만 그 준비가 필요하므로 5년의 로드맵을 갖고 완전 자격시험으로 운영할 때까지 임시로 합격선을 정해야 한다.²⁵⁾ 또한, 2021년도 변호사연수는 대한변협이 그 대상인원 제한정책을 철회하여 다행히 연수를 받지 못하는 인원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향후 변호사연수제도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연수를 시행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2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① 교육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4) 「변호사시험법」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5) 오수근, 김두열, 이승준, 변호사시험의 완전자격시험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삼영문화사(2020), 163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성과와 발전 방안 심포지엄



종합토론

토론 1

정승환 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의 성과와 발전 방안

정승환 | 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입학전형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과 함께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계층에서도 다수의 법조인이 배출되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입학 인원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성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균형 인재선발 제도를 통해 수도권 이외의 다양한 지역에서 법조인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대학원 교육 체제인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은 사법시험 체제보다 더 다양한 대학과 전공의 학생들이 법조인으로 진출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향후 더 나은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발제자께서 제시하신 개선안에 대부분 공감하면서, 한 두 가지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 각 법전원의 특성에 맞는 입학전형

발제자께서 전국 25개 법전원의 입시제도가 획일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지원자들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통일적인 전형요소와 입학절차가 필요하겠지만, 학교별 특성에 따라 전형요소와 선발일정을 다양하게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도 있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정량평가 위주의 선발이 강요되다시피 하고, 정성평가에서도 블라인드 방식의 서류평가와 면접을 강조하다 보니 지원자의 전공 등 특성에 따른 평가가 제한되어 다양한 전공 출신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최근 학부생들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법전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전공에 상관없이 로스쿨 진학을 위해 학점을 관리하고 리트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로스쿨에 진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견상 출신 전공은 다양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획일적인 성격의 학생들이 선발되고 있습니다. 법전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입학전형에서 각 법전원에 자율성을 더 확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 정량평가 요소의 다양화

교육부는 법전원 입시에서 정량평가 요소로 법학적성시험 점수와 학부성적, 그리고 외국어 성적을 필수반영요소로 지정하고, 이행점검을 통해 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외국어성적까지 교육부에서 필수 반영요소로 강제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외국어성적의 반영은 실질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요소가 있습니다. 영어 성적의 경우 지원자들이 응시해서 제출하는 평가기관별 점수가 다양해서 일관된 기준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영어 외의 외국어 성적 반영방식도 대학마다 다양합니다. 다소 엉뚱한 생각이지만 장차 법조인으로 활동할 인재를 선발한다는 관점에서 외국어보다는 한국어에 대한 기본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KBS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 점수를 전형요소에 반영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일부를 제외하면 법조인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말과 글의 올바르고 정확한 사용능력이고, 법조인이 외국어를 사용할 일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평가요소의 도입은 지원자들의 부담을 크게 높일 염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2.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제도

가. 성적 평가 방식

이 부분에 대해 발제자께서 ‘변호사협회의 법전원 평가’가 갖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잘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토론자는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측면과 조금 다른 문제인 법전원 교육에서 ‘성적평가’의 문제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전원 출범 이후 법전원의 교육과정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는 점차 그 방향을 잃고 과거 사법시험 시대처럼 “시험을 위한 교육”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법전원마다 특성화 분야를 표방하고 있지만 합격률이 높지 않은 변호사시험을 눈앞에 둔 학교와 학생들은 시험과목 위주의 교육과 공부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특성화 과목은커녕 법조인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선택과목들도 폐강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또 일정한 정도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보장받기 위해 시작된 엄격한 상대평가의 룰 때문에 학생들은 교내의 시험에서도 무엇을 공부하는가? 보다는 학점이 얼마인가에만 집중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뒤에서 말씀드릴 변호사시험제도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의 개선이 전제가 되어야 하겠지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지금처럼 담보상태에 머물 것이라면 법전원의 성적평가 방식에서 엄격한 상대평가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성적평가에서도 모든 법전원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학 교육의 자율성이 대학원 수준의 교육에서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각 대학별로 학생들의 성취도를 측정하고 이를 성적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성적평가 방식이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나. 실무 교육

법전원의 교육은 실무 교육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법과대학의 교육과 구별됩니다. 그러나 정작 충실한 실무교육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충실한 실무교육을 위해서 실무 출신 교원을 더 많이 임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무 출신 교원이라도 법전원 교수가 된 후에는 실무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면 그 교원의 실무경험이 법전원 교육에서 갖는 의미가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실무 출신 교원에게 제한된 범위라도 실무 경험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실무교육의 아웃소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법원과 검찰에서는 각각 판사와 검사를 파견하여 법전원의 실무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졸업생의 대다수가 진출하는 변호사 업계에서는 체계적인 파견교육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무교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턴십 교육도 변호사실무의 경우 서울의 주요대학 학생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단체에서 소속 변호사를 법전원 실무교육을 위해 파견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협회에서 5년마다 한 번씩 법전원을 평가하면서 법전원과 끈끈러운 교류를 하기보다는 평소 법전원 교육에 일부 참여하면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법전원 학생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 변호사시험과 변호사 연수제도

현재 변호사시험 제도의 운영방식은 법전원 교육이 파행으로 흐르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발제자께서 지적하신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시험방식의 문제들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몇 가지 개인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응시기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현재의 추세대로 제한하는 것은 법전원 도입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한 양성”이 아닌 “시험을 통한 선발”로 다시 되돌아간 것입니다. 과거 사법시험 1,000명 시대에서 변호사시험 1500~1600명 시대로 변화한 것뿐입니다. 합격률을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 업계의 어려움 또는 두려움에 기반한 요청이 주된 이유이겠지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돌이켜보면 고등고시 사법과 시대에 정원을 정하지 않고 절대평가로 선발하던 방식에서

150명 정원의 상대평가 방식에 의한 선발, 그리고 300명 정원의 사법시험이 1,000명 정원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늘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 업계가 붕괴된 것은 아닙니다. 1600여 명에서 100명 또는 200명의 인원이 더 법조인으로 진출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이 갑자기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변호사시험은 법전원 도입의 취지에 따라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합격인원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법조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발제자께서는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를 5회로 제한하는 현행의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응시횟수의 제한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응시기간을 졸업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시생의 사정에 따라 공부가 부족하면 다음 해에 응시할 기회 정도는 주어져야 할텐데, 그러한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과잉금지에 해당합니다. 변호사시험에 5회 응시하기 위해 얼마의 기간을 보내든 그것은 응시생의 사정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고시 낭인’을 막기 위해 응시기간까지 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국가의 역할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 변호사 시험의 방식

컴퓨터를 이용한 답안지 작성 방식은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도입되어야 합니다. 2년 이내로 앞당겨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선택형 시험 과목의 축소를 위해 현재 입법이 진행중인 법안도 최대한 빨리 개정되어야 합니다.

선택형 시험과목의 축소와 더불어 꼭 필요한 것은 선택형 시험의 점수를 최종점수에 합산하여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즉 과거 사법시험 1차처럼 2차 시험을 위한 자격조건으로만 활용하는 것입니다. 선택형 시험의 점수를 사례형 및 기록형과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하게 되면 선택형 시험이 합격 여부를 좌우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학생들은 선택형 시험 문제에 더 치중하게 됩니다. 선택형 시험 문제는 오답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거의 100% 판례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 학생들은 판례 외우기를 학습의 방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은 법전원 교육에 그대로 영향을 미쳐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법조인 양성과는 거리가 먼 파행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의 방식을 개선할 것이면 좀 더 큰 틀의 개선을 모색하여 헌법, 민법, 형법의 기본과목에 대한 선택형 시험을 법전원의 졸업자격 시험 또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시험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즉, 법조윤리 시험을 포함하여 기본과목의 선택형 시험을 법전원 재학 중 합격하도록 하고, 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조건으로 법전원 졸업이나 변호사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시험의 중점을 선택형이 아닌 사례형과 기록형에 두도록 함으로써 장차 법조인들이 될 학생들의 서술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법전원 교육의 중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 변호사 연수제도

변호사의 연수기관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변협의 횡포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법안이지만 그러한 목적은 부차적인 것이고, 의무연수 대상인 변호사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이 법안이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전에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6개월 의무연수 규정이 필요하다는 발제자의 입장과는 다른 의견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발제문에도 들어있지만 의무연수 제도는 ‘법전문 석사학위 취득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곧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근거 없습니다.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가 배출된 지 10년이 넘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시험합격자들만 의무연수 기간 동안 연수를 받는 현실은 모순됩니다. 변호사시험 합격 전후에 이미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은 의무연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송무를 제외한 모든 ‘법률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들에게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의무연수 기간은 폐지되거나 축소되어야 합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수는 신입 변호사들의 소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실제로 법원과 검찰 등에서, 로펌에서 의무연수 기간 동안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의무연수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이들 기관의 신입 변호사 교육은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무연수가 아닌 자율적 연수로 변경하여야 하고, 의무연수가 꼭 필요하다면 3개월 정도로 단축해서 신입 변호사들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성과와 발전 방안 심포지엄



종합토론

토론 2

장석천 원장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2

장석천 | 원장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리는 오랜 논의 끝에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목표 하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출범시켰고 엄격한 인가 기준에 의하여 25개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인가를 받아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할 당시에는 교육목표, 학생의 선발, 교육과정 등이 이상적으로 설계되어 이대로 운영한다면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조인의 양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10년 넘게 법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면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또한 외부로부터도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점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도 인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비판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은 그 동안 많은 제도개선을 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세 분의 원장님들도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으로서 저 또한 발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다만 토론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의 구성원으로 느꼈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저의 생각을 이야기 해보면서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첫째, 입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지역인재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우선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일정부분 지역인재의 육성과 지방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부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발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대학교 졸업자를 우선 선발 대상으로 하면서 논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인재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지방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정원의 충원에 있어서 수도권과 해당 지역 이외의 학생들에게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과 이런 학생들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변호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연고가 있는 지역으로 갔다는 점 등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선발기준을 해당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대학을 위해서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었던 인재를 다시 지방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인재들이 법조인이 되어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인증평가와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법학전문대

학원의 교육이념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제5조 및 제6조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제16조 이하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면 설치 인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동 법률 제27조 이하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가 받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법률에 규정된 교육이념의 달성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교원, 시설, 교육과정 등에 대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이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그러나 그 평가기준이 너무 교육현장과 동떨어져 있고, 평가위원회가 너무 학교 교육에 관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교과과정을 법조인 양서에 적합한 과정을 만들었다면 그 각각의 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나 교육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담당 교원의 고유한 판단영역이며 교원에게 보장되어 있는 수업권(授業權)이다. 그러나 5.교육성과 부분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한 간섭이고,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千篇일률적으로 운영되도록 강제하고, 평가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다양한 법조인의 양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또한 평가기준이 얼마나 현장과 동떨어져 있는지 논문에서도 이야기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예를 살펴보면 1.4.2. 복지시설 1.4.2.(4) (육아시설의 이용가능성)의 경우 2014년 4월부터 육아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아이사랑 보육포털에 입소대기신청을 한 뒤에 입소하게 되어있어 운영규정상 입소기회가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기준에 실효성이 없으며, 4.5.2. 특성화 4.5.2.(3) (현장 교육과 연계성, 적합성) 4.5.2.(4) (특성화교육의 실질적 기여) 경우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학업시간 부족 및 현실적으로 특성화교육과 연계한 현장학습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이 거의 없고,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를 평가기준에 두는 것이 현실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보여 진다.

셋째, 변호사시험과 관련해서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제도를 도입 당시에 우리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쉽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변호사가 너무 많아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원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수가 많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송무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한다면 국민들은 더 많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시험과 관련한 법률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필요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도입된 지 벌써 1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 제도 도입당시에는 이상적으로 제도를 설계하여 도입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성과와 발전 방안 심포지엄



종합토론

토론 3

김태경 과장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Blank lined area for writing.

Blank lined area for writing.

Blank lined area for writing, consisting of multiple horizontal dotted lines.



종합토론

토론 4

유동주 법조팀장 (머니투데이)

로스쿨 발전은 로스쿨 주도로

유동주 | 법조팀장 (머니투데이)

(주제1 토론문) 입학전형·장학금은 90점, 문제는 ‘홍보’와 ‘자율성’

1. 입학전형

로스쿨 입학전형과 장학금은 2009년 개원 당시에 비하면 2022년 현재, 매우 정교하게 발전돼 있다. 초기 로스쿨에선 입학전형 일부는 불투명했고 각 학교는 최대한 교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자 중에서 선택을 하는 모습이 뚜렷했다.

입학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입맛에 맞는 입학생을 대놓고 고른다는 정황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일부 로스쿨에선 2009년 1기 입학생과 그 다음해 2기나 3기 입학생 구성이 전혀 달라지기도 했던 점에서 ‘선발 자율도’가 굉장히 높았다.

하지만 로스쿨은 초기부터 사법시험 존치주의자들에 의한 지속적인 공격에 시달리면서 학교 별 ‘선발 자율’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입학단계는 여론의 압박을 받은 교육부에 의해 더 표준화됐고 더 투명해졌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준의 부정입학은 단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던 점에서 로스쿨은 입학전형에서의 투명성만큼은 이제는 역사속에 사라진 의학전문대학원보다는 비교우위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가 로스쿨 내부의 자율적인 개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의 여론을 의식한 타율적인 개혁이었던 점에서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로스쿨이 외부와의 격렬한 다툼이 없었다면 지금 같은 투명한 입시제도가 제대로 성립할 수 있었겠느냐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로스쿨 입시전형의 발전 성과는 ‘감시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물론 외부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보다 나은 전형제도를 고민하고 투명성을 높인 로스쿨 관계자들의 노력은 마땅히 인정받아야 한다.

입학전형 변화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선 특별전형이나 지역균형인재 출신 변호사에 대한 홍보방안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로스쿨 입학전형의 숙제

2022년 현재 시점에서 남은 로스쿨 입학전형에서의 숙제는 ‘다양성’ 확보다. 발표자께서 지적했듯 현재 입학전형은 전국 25개 로스쿨이 강제적으로 거의 비슷한 매뉴얼대로 시행하고 있다. 초기에 비해 ‘선발 자율도’가 매우 떨어진 점은 장단점이 있다. ‘부정’의 개입 여지가 줄었지만, 스펙 혹은 리트와 학점 및 영어점수 ‘줄세우기’나 마찬가지로처럼 돼 버렸다.

여기서 파생된 또 하나의 문제는 애초 로스쿨 도입 취지와는 조금 상이하게, 학부 졸업 후 여러 분야에서 사회경험을 쌓은 뒤 입학하는 루트가 사실상 매우 좁아졌다는 것이다.

로스쿨 입학에 대해 학부 신입생부터 학점관리 등에 들어가야만 하는 현 세대는 세대의 변화로만 설명할 순 없다.

특히 신입생의 나이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은 입시가 정량 평가 위주로 바뀐 결과일 수도 있지만, 각 학교의 의도적인 선발일 수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로스쿨을 운영하는 학교와 입학에 관여하는 교수들은 이 문제에 대해, 교육부 지침대로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어린 지원자가 선발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로스쿨 개원 초기부터 30대 이상 연령의 지원자들은 주요 로스쿨에 입학이 거의 되지 않았던 사실은 이미 통계로도 증명된다.

따라서 현재 로스쿨 입학생들은 지역 로스쿨에 대한 규제 영향 등으로 학부 출신은 다양해졌겠지만, 그 집단의 동질성은 더 강화된 셈이다. 로스쿨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결과다.

어느 분야에서나 치열한 경쟁을 당연시하는 한국적 풍토에선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직장인들에게 재교육 기회나 전문직으로의 전환 기회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한국 로스쿨의 실태는 무척 우려되는 상황이다.

물론 ‘변호사시험 합격률’이라는 거대한 숙제 앞에 이런 지적은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합격률이 어떤 숫자로 귀결되더라도 그 안에 속할 수 있는 합격자들의 평균 나이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합격자가 향후 1800명, 2000명 수준이 되더라도 그 대부분이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진학한 20대 중후반 연령대로만 채워진다면 한국 로스쿨은 이상적인 전문직업학교라고 볼 수는 없다.

3. 특별전형 입학생 문제에 대한 직시

발표자의 자료에도 나왔듯 특별전형 입학생은 제도에 의해 늘었고 현재는 충분한 수준이라 판단된다. 문제는 그들이 변호사로 배출됐느냐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발표자를 포함한 로스쿨 당국 혹은 교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최근 통계가 나오지 않아 정확하지 않지만 특별전형 입학생들 상당수가 결국은 로스쿨 입장에서 ‘부담’이고 ‘버린 카드’가 돼 버리는 현실에 대해 이제는 더 크게 말할 때가 됐다.

이 문제 역시 ‘변시 합격률’과 연동되지만 그렇기에 더욱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 숨기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극단적 선택’ 등 로스쿨 제도의 여러 문제로 인해 빚어진 비극들에 대해서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비극’ 혹은 ‘선택’으로 치부하고 공론화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로스쿨 사회에 분명하게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이 다른 제도, 다른 이슈에서 발생했다면 그 여파와 결과는 많이 달랐을 것으로 짐작된다.

‘OOO법’으로 지칭되는 포퓰리즘 입법은 물론 문제가 많다. 하지만, 결국 한국처럼 기존 제도를 바꾸기 어려운 사회에선 어떤 이슈에 대해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명분과 힘은 그런 비극에서 시작된다는 점도 무시할 순 없다. 무관심한 사회와 대중에게 문제적 이슈를 한번 환기시킨다는 점에선, 로스쿨 커뮤니티 구성원의 안타까운 비극을 얘기하기 꺼려하고 쉬쉬하면서 비극만으론 묻어두는 게 오히려 더 그들이 바라던 바가 아닐 수 있단 점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4. 변시 합격률은 로스쿨의 경쟁력이 아니다

발표자 발표문 취지와 내용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는 바다. 하지만 발표문 중 일부 문구에 대한 지적을 통해 본 심포지엄에 참석하거나 참여하고 계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주장이 있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쟁력이 평가되는 현실에서~”

위 문구를 지적하고 싶은 이유는 실제론 전혀 그렇지 않은데 로스쿨 당국과 교수들께서 유독 그렇게 믿고 제시단 점을 상기시켜드리고 싶기 때문이다. 실제로 1기 졸업생이 변시를 보기도 전 이런 류의 우려가 교수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교육부와는 무관하게 졸업사정이라는 명분으로 변시 합격률을 사실상 ‘조작’하려는 시도를 한 학교들이 생겨났다. 결국 이 시도는 그럴듯한 ‘숫자’로 포장돼 언론 홍보에 쓰였고,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 언론들은 받아쓰기로 합격률을 보도하면서 해당 학교의 성과는 부풀려졌고, 그 이후 다른 학교들이 따라하게 만든 계기가 됐다.

지적하고 싶은 건, 로스쿨의 경쟁력은 변시 합격률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점이다. 오히려 그렇게 평가받고자 했던 것은 초기부터 로스쿨 당국과 교수들이었던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5개 로스쿨이 처음부터 변시 합격률에 관한 신사협정을 맺고, 전체 합격률을 유지하는 것에 더 힘을 기울이고 각 학교의 합격률 격차를 강조하지 않았다면 더 나은 로스쿨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다.

우리 로스쿨의 모태라고 할 수 밖에 없는 미국 로스쿨에선 상상하기 힘든 이상한 경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25개에 불과한 한국 로스쿨들이 로스쿨 제도 발전과 개선을 위해 협력하면서도 불필요한 부분에서의 경쟁의식으로 스스로 제도를 나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반성도 필요하다.

물론 이 사안 역시 전체 합격률이 개선되는 것과 연동된다고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합격률이 높았던 1기 졸업생, 1회 변시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점은 로스쿨 당국 혹은 교수들의 잘못된 판단이 로스쿨 제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5. 로스쿨 제도는 개선되고 있다

매년 이맘때 열리는 로스쿨 관련 토론회나 심포지엄은 비슷한 주제를 반복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열리지 않는 문을 두드리는 격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는 분명 개선의 여지가 있고 계속 변화하고 있다.

특히 담당 부처인 교육부와 법무부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입장을 취하는 지에 따라 로스쿨 제도는 급격히 바뀔 수 있다.

실제 사례를 봐도 시험장 확대와 정부지원 장학금은 로스쿨의 숙원사업이었는데 결국 일부나마 이뤄졌다. 이 사안들에 대해 담당 부처는 십수년간 “절대 안 된다” 혹은 “인력과 예산 사정상 어렵다”를 반복했다. 하지만 결국 일순간 해결됐다.

지금 로스쿨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문제들도 당장 이뤄지진 않더라도 정당한 요구사항이라면 언젠가 정부 당국자의 입장 변화 혹은 여론의 관심으로 해결될 수 있다.

(주제2 토론문) 로스쿨 평가에서 변협이 빠져야 하는 이유

1. 로스쿨 평가와 변협 이해충돌

대한변호사협회는 2년마다 열리는 집행부 선거에 의해 정책방향이 180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변협은 공적단체 성격보다 직렬을 대표하는 이익단체 성격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로스쿨 사안에만 한정해 살펴봐도 로스쿨 평가 권한을 변협에서 쥐고 있던 점도 큰 문제 중 하나다.

입법 당시 정치적 판단으로 로스쿨 도입을 강행하는 대신, 이해 반대하던 변호사단체에 평가권한을 맡겼다. 그 결과가 현재의 이해충돌을 만들고 있다.

당시 입법자들과 정부의 발상은 건강한 ‘견제’와 적당한 ‘균형’이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변협의 로스쿨 평가는 대체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이뤄지고는 있지만, 변협 내부 정치적 이해관계로 로스쿨 평가 내용이 쓰이고 있다. 발표자께서 지적한 변협 자체 평가도 마찬가지다.

변협의 로스쿨 평가가 변시 합격률 이슈와 결부돼 순수하지 않은 목적의 평가가 돼 가고 있다. 이런 상태로 지속된다면 향후 법령에 따른 정기 평가도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로스쿨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평가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

현 상태 그대로 둔다면, 평가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결국 평가 신뢰도를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해 평가 무용론이 대두될 수 밖에 없다.

2. 변협 평가의 문제점

현재 변협의 로스쿨 평가위원 중 변협 추천 외부위원들 면면을 봐도 변협이 로스쿨 평가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로스쿨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들도 변협 집행부 추천으로 위촉돼 있는 경우가 있다. 법조 외부에 있는 인사를 위촉하더라도 최소한 로스쿨 제도에 대한 이해가 돼 있는 이들이 평가를 맡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변협 로스쿨 평가위원 중 외부 위원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다. 결국 변협은 로스쿨 평가에서 손을 떼야하고 그 방향의 입법이 필요해보인다.

변협이 로스쿨 평가를 맡는 것을 당연히 할 필요는 없다. 그간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그것을 근거로 한 법률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3 토론문) 변사에서 법무부가 빠져야 하는 이유

1. 법무부의 '변사 관리'가 로스쿨 문제의 핵심

로스쿨 위기는 내부에도 있지만 외부에 의한 경우도 많았다. 특히 법무부는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구인 '변사'를 맡은 중앙부처로 로스쿨을 위기로 자주 몰아넣은 장본인이다.

로스쿨 제도가 잘못 설계됐다면 가장 큰 문제는 법무부가 변사를 맡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관점으로 '변사'를 관리하고 있다. 이는 제도 변화와 로스쿨 도입취지를 망각한 것이다. 일단 법무부에 권한이 주어진 이상, 변사의 앞날은 밝지 않다.

법무부의 변사관리 권한을 이관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법무부는 사시 출신 검사들의 조직이다. '법조인력과'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무부 검사들은 퇴직 후엔 '전관' 변호사가 된다. 변사를 통해 변호사가 많이 배출되면 검사들은 스스로 퇴직 후 입지가 좁아지고 경쟁이 격화되는 법률시장에 뛰어들어야한다. 따라서 모든 검사들은 사실상 변사 합격률과 '이해관계'가 있고, 특히 변사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스스로 '이해충돌' 상황에 빠진다.

그들의 선의를 믿기보단, 제도적으로 그들이 그런 업무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 법무부가 변사 업무를 그대로 하게되선 안 된다는 결론이 된다.

로스쿨 측은 그런 법무부의 이해충돌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법무부의 변사 관리 포기를 이끌어내야 한다.

사시를 넘어서 변시는 전혀 다른 시험이 돼야 한다는 명제에도 법무부는 아직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시 출신 검사들은 더 그렇다.

‘선발’에서 ‘양성’으로 제도가 바뀌었으면 그에 걸맞는 시험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지금 변시는 법무부 관리하에 ‘유사’ 사시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물론 변시가 ‘유사 사시’가 돼 가는 과정엔 로스쿨 소속 출제 교수들의 고집스런 출제 방식도 한몫하고 있다. 최종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적극 나선다면 변시는 사시와 유사한 시험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그럴 의지와 의도가 전혀 없단 점을 감안하면 법무부가 변시에선 손을 떼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일부 로스쿨 구성원들은 변시가 사시만큼 어려워야 사시 출신만큼 대우받는다든 식의 어리석은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로스쿨 제도는 아직도 내부 구성원들에 의해서도 그만큼 ‘몰이해’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아직도 로스쿨은 국민들이 가진 오해를 풀어주지 못하고 있단 점이다. 오늘 주제들 모두 국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오해하고 있을 사안들이다. 그만큼 로스쿨 측은 설득력 있는 홍보로 그간 로스쿨 제도를 가로막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였던 과거 변호사단체들에 의한 프로파간다의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데 힘써야 한다.

변시 자격시험화나 제도 개선은 국민 일반의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사고방식을 개조하는 수준의 ‘홍보활동’이 병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여전히 로스쿨에 대해 ‘몰이해’ 상태인 국민 일반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비토와 편견 속에 제대로 된 성장을 하지 못한 로스쿨 제도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

‘한국 로스쿨은 일본 로스쿨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낮은 수준의 예측에는 동의해서도 안 되고 동의할 수 없어야 한다.

한국 로스쿨은 시작부터 일본 로스쿨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았다. 이런 이해 없이 일본이 망했으니 한국도 망한다는 식의 일차원적 주장을 하는 이들과는 로스쿨 개선을 함께 논하기 어렵다.

2. ‘유사 사시’ 벗어나야 변시와 로스쿨이 정상화된다

최근 2년간 미국 일부 주에선 코로나19를 이유로 바시험을 아예 면제하거나 약식으로 하는 식으로 변호사를 배출시켰다. 변호사 숫자를 통제하지 않고 시장에서 경쟁시킨다는 걸 전제로 하는 로스쿨 제도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변시를 유사 사시로 여기는 이들이 의사결정권자들과 법무부에 있다. ‘선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시각 교정’ 없인 로스쿨과 변시는 앞으로도 합격률 문제로 덜컹거릴 수 밖에 없다.

우리 법체계는 대륙법에 뿌리는 두고 있지만 상당부분 영미법을 받아들인 ‘하이브리드’다.

로스쿨도 마찬가지다. ‘하이브리드형’ 로스쿨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변시 관리를 그대로 맡길 순 없다.

로스쿨 운영 주체 스스로도 변시를 유사 사시로 바라보던 시각부터 버려야 한다. 아직도 그렇다면 그것은 로스쿨 도입 취지부터 이해하지 못한 퇴행적 사고라 생각한다.

로스쿨 구성원들이 제도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변시 합격률 보장과 자격시험화도 이뤄내야 한다.

3. 실무수습 변화는 ‘로스쿨 주도’, ‘법률소비자 시각’ 고려해야

현재의 실무수습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선 동의한다. 로스쿨 3년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하면 별도의 추가 연수가 필요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는 현 제도하에서도 실질적으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간 일하는 인턴 변호사들이 ‘교육’보다는 ‘업무’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견 타당하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해 ‘집체교육’의 필요성이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25개 로스쿨의 ‘교육의 질’의 균등성에 대해서도 새삼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사법연수원에서의 집체교육’은 6개월 실무수습제도가 만들어진 뒤 그 대안으로 여러 번 제시됐던 방법이다.

사법연수원에서의 연수제도를 로스쿨 교육의 대체보완재로 인식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즉 로스쿨에서 완성된 법률가를 양성시킬 수 있는 것을 전제로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완성된’ 법률가로 법률시장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5개 로스쿨에서 균질한 변호사를 배출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려해 볼 여지도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집체교육은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다. 교육 주체가 어디가 되느냐가 더 문제다.

다만 현재처럼 실무수습을 대체하는 변협 집체교육이 그 자리를 계속 지켜선 안 된다.

이미 여러번 설명했듯 변협은 '이해충돌'문제로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 양성과정에서 배제돼야 마땅하다.

로스쿨에서 실무과목을 거쳤고 변호사시험에서 시험까지 통과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무 집체교육은 3개월 정도면 충분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은 이미 연수생이 학년별로 1000명인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변시 합격자들을 일시에 수용해 연수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집체 교육이 없는 미국식 로스쿨이나 신사법시험 합격후 1년간 사법연수소에서 연수를 받는 일본식 로스쿨 제도와 한국식 로스쿨 제도는 다르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 한국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은 변호사들에게 최소한의 '균질성'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

실무교육의 증점을 로스쿨에 그대로 유지하느냐 연수원 집체교육쪽으로 좀 더 이전하느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한국 법률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3개월 정도 단기간이라도 집체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

현 6개월 실무수습의 가장 큰 부작용이라 볼 수 있는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실무수습을 폐지하거나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앞서 설명했듯, 실무수습 폐지는 로스쿨 측에선 환영할만한 변화겠지만 법률서비스 소비자 입장에서선 어떻게 받아들이나의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로스쿨에서 실무교육을 거쳤더라도, 변시 합격자들이 3개월 가량 사법연수원 집체교육으로 최소한의 균질한 실무교육을 수료한다면 이들의 실무능력에 대한 시장의 인식은 향상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한 법령 개정이나 예산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번 기회에 변호사법과 변호사시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정리해 로스쿨 측에서 입법을 통한 변화를 추구할 때가 됐다.

로스쿨 제도를 둘러싼 대부분의 사안들은 로스쿨 주도로 풀어나가야 한다. 과거보단 더 적극적으로 현재보단 더 진정성있는 개선의지가 요구된다.

-끝-

MT  머니투데이

올해 로스쿨 '특별전형' 입학한 164명, 3년뒤 변호사 될 수 있나

기사입력 2021-03-28 12:56 최종수정 2021-03-28 13:57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18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인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옆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 주최로 열린 '어게인 218, 로스쿨개혁이 사법개혁이다' 쟁기대회에 변호사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들을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 있다. 이들이 도서관 대신 거리로 나선 이유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이 각각 도입 취지와 달리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응시인원이 아닌 입학정원이라는 고정된 인원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배출한 결과 매년 누적적으로 탈락자가 발생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2020.2.18/뉴스1

202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전체 인원 2126명 중 164명(7.71%)은 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으로 선발됐다.

164명의 로스쿨 특별전형 입학생들은 '취약'계층에게 보장된 전액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로스쿨 제도가 개선책 없이 현 상황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 중 상당수는 3년 뒤 변호사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특별전형 입학생의 변호사시험 탈락비율은 일반전형 학생들에 비해 매우 높다. 일부 로스쿨에선 10명 중 7~8명이 탈락한다. 대부분 번시 재수생이 되고 5번의 응시기회를 갖지만 5번 안에 합

격하지 못하고 '영구 오탈자'가 되는 게 현실이다. 2019학년도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입학 정원의 '7% 이상'으로 특별전형 비율을 그전보다 2%포인트 높였지만, 변시 합격률이 급락하면서 이들이 오탈자로 전락하고 있다. 늘어난 특별전형 입학생이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라 '오탈자'가 된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특별전형' 입학생, '변시 탈락자' 일반전형 출신에 비해 많은 이유... '재수' 생활 버티지 못해 '포기'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취약계층이 '오탈자'로 전락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다수의 특별전형 입학생들이 일반전형 입학생들에 비해 변시 수험공부에 몰두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체로 특별전형 학생들은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로스쿨 재학 중 가계를 위해 휴학을 하고 생활전선에 다시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등 불리한 여건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이유들로 초회 변시 합격률도 특별전형 출신들이 낮지만 특히 그들 변시 재수생이 된 순간 합격률은 급락한다. 특별전형 학생들은 초회 변시에 탈락해 N수생이 되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거나 기존 장애로 인해 일반전형 출신들보다 훨씬 더 고단한 수험생활로 합격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이들을 위한 로스쿨 장학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액 등록금과 일부 생활비를 지원한다. 학교에 따라선 조교로 채용해 근로 장학금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졸업과 동시에 변시에 합격하지 못하고 재수생이 되면 그 이후엔 집안 도움없이 재수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특별전형 출신들은 변시 응시를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 변시 합격률이 50% 초반으로 떨어지면서 로스쿨에 가까스로 입학하고 3년 재학기간을 버틴 특별전형생들의 불합격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다.

로스쿨이 정상화 돼 3년간 로스쿨을 다니는 것만으로 변호사가 될 수 있어야 하지만, 합격률이 떨어지면서 경계선상에 있는 특별전형 학생들은 가장 먼저 탈락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로스쿨 커뮤니티에선 변시 합격률이 개선되지 않는 한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은 학교와 학생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취약계층'에게 '희망고문'된 로스쿨 입학...교육부는 입구 열고 법무부는 출구 닫고 '환장의 케미'

이에 대해 한 지방 로스쿨 교수는 "특별전형 입학생들을 뽑으면서도 변시 합격 가능성을 생각하면 이들에게 희망고문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다"며 "면접장에선 자신감 넘치고 희망에 차 있던 학생들도 3년 뒤 변시에 탈락하고 이후 재수과정에서 가정 형편이나 신체 장애로 수험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탈락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죄짓는 심정이 될 때가 많아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로스쿨 전문가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이나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변시 합격률이 '일반전형' 입학자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정부가 외면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변시 재수생이 누적되면서 합격률이 50%밖에 안 되는데, 특별전형이나 지역인재전형 입학자들은 50%에도 훨씬 못 미치는 20~30%대에 머물러 있지만 관련 부처인 법무부나 교육부는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입학단계에서의 '특별전형 확대'만 홍보하고 있단 것이다.

교육부는 특별전형 계층에게 로스쿨 입구만 넓혀 놓고 출구는 법무부가 꽉 잠궈놓는 기이한 '탁상 행정'이 계속되고 있단 비판이 제기된다.

특별전형 출신 변시 합격률 낮아지자 슬그머니 통계자로서 뺀 법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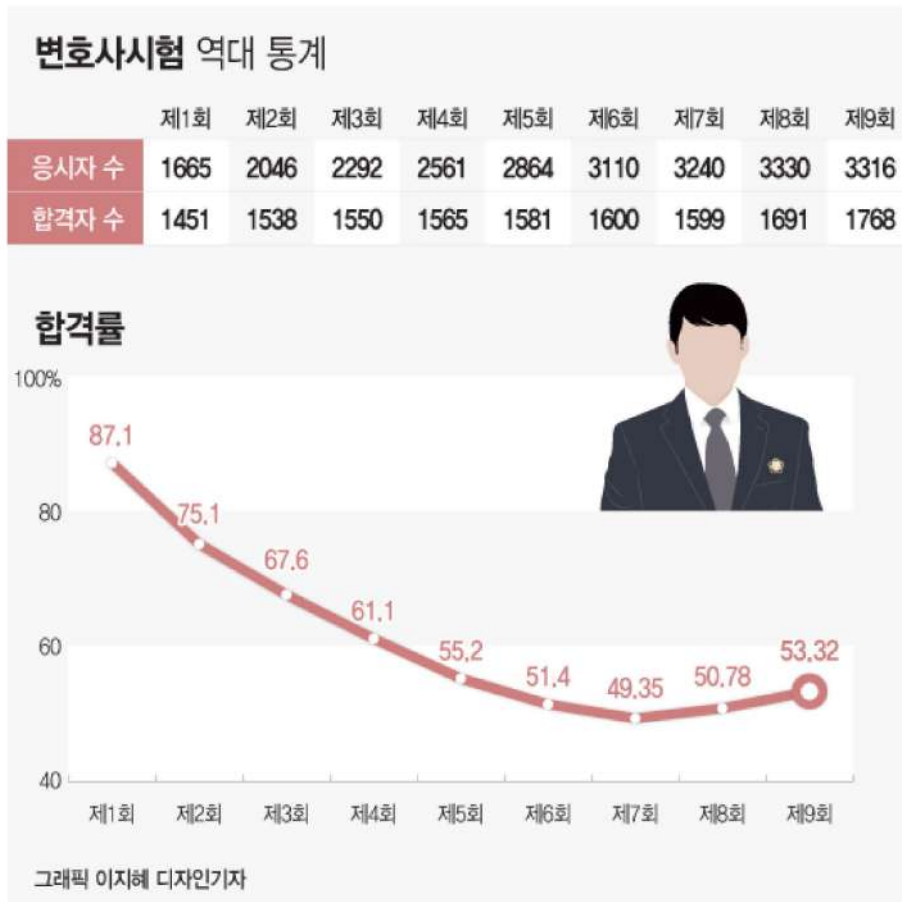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법조문턱낮추기 실천연대, 법교육정상화연대 등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로스쿨 교육·변호사 시험 합격률 정상화와 변호사시험법 제7조 폐지를 촉구 하고 있다. 2020.02.18. yesphoto@newsis.com

특히 법무부는 특별전형 학생들의 변시 합격률이 너무 낮게 나오자, 몇년 전부터 아예 합격자 발표 시 내놓는 통계자료에서 빼버리는 꼼수를 쓰기도 했다. 실제 법무부는 4회 56.39%를 마지막으로 이후로는 특별전형 입학생들의 변시 합격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수의 로스쿨 운영 대학들도 졸업생들의 변시 합격률에서 특별전형 학생들의 합격률을 따로 집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 각 로스쿨들은 비공식적으로만 특별전형생들의 합격률이 일반전형생들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인정하고 있다.

로스쿨 출신의 한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 초기부터 나온 계층 사다리 논란에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특별·지역인재전형을 만들고 강화한 건 교육부지만 변시 합격자 결정은 법무부가 하면서, 취약계층을 입학만 시키고 이후 관리나 배려를 전혀 할 수 없는 구조가 문제"라며 "변시 합격률이 높게 유지됐다면 문제가 안 될 수 있었겠지만 합격률이 50%로 떨어지면서 취약층이 먼저 타격을 받고 변호사가 되지 못하고 낙오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계층이동 사다리라는 명분으로 뽑은 취약계층이나 지역인재들이 실제로는 대다수가 하위권 성적에 머물고 변시 탈락자들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이제는 공론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통 사고로 후천적 장애를 입은 뒤 장애인을 위한 특별전형으로 입학했던 한 로스쿨 졸업생은 "특별전형생들이 여러 사정으로 수험생활을 일반전형 학생들처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다보니 변시 합격률도 상당히 차이가 난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나 법무부 그리고 각 로스쿨에선 이 문제를 회피하고 못 본척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 ▶ 부동산 투자는 [부릿지]
- ▶ 주식 투자는 [부꾸미TALK]

아재 안 뽑는 로스쿨...3040 직장인에게 문 닫아

기사입력 2021-03-27 20:31 최종수정 2021-03-29 04:16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사회 경험 쌓은 3040 직장인에게 문 닫힌 로스쿨..낮은 '변시 합격률'에 20대 어린 입학생 선호]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18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인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열린 '어게인 218, 로스쿨개혁이 사법개혁이다' 토크대회에서 변호사 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외치고 있다. 이들이 도서관 대신 거리로 나선 이유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이 각각 도입 취지와 달리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응시인원이 아닌 입학정원이라는 고정된 인원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배출한 결과 매년 누적적으로 탈락자가 발생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2020.2.18/뉴스1

30대~40대 이상 연령층의 로스쿨 입학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의 문이 직장인들에게겐 좁아지고 있어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입학한 로스쿨 신입생 2126명 가운데 만40세 이상은 17명에 불과했다. 비율로는 0.8%로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35~40세 68명(3.2%), 30~34세도 95명(4.47%)에 불과하다.

나이가 30대만 넘어가도 로스쿨에 입학하기 어려워졌고 40대라면 아예 변호사의 꿈을 접어야 할 정도가 돼 다양한 사회경험을 거친 입학생을 받아서 법조인으로 양성해낸다는 애초 로스쿨 취지는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2009년 개원시 첫 로스쿨 입학생 평균나이가 30세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갈수록 로스쿨 입학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구 분	남	여	계	비율(%)
22세 이하	19	15	34	1.60
23세 ~ 25세	324	561	885	41.63
26세 ~ 28세	484	262	746	35.09
29세 ~ 31세	204	77	281	13.22
32세 ~ 34세	69	26	95	4.47
35세 ~ 40세	49	19	68	3.20
41세 이상	10	7	17	0.80
계	1,159	967	2,126	100

2021학년도 로스쿨 입학생 연령별 현황/자료= 법전협

특히 서울 등 수도권 로스쿨에선 30대 이상 연령대의 입학은 더 어렵다. 지난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로스쿨에 합격한 32세 이상 입학생 비율은 △2018년 53명(4.6%) △2019년 61명(5.2%) △2020년 41명(3.5%)으로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특히 서울대·고려대 등은 지난해 32세 이상 입학생을 단 한명도 뽑지 않았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는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비(非)법학 전공자 비율과 타대학 학사출신의 비율이 각각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여기에 '입학자 연령'에 대한 쿼터규정도 법률 개정을 통해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입법이 추진된 바 있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선 일부 의원실에 의해 로스쿨 입학생 중 30대 이상 연령층을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온라인 로스쿨 도입 움직임과 맞물려 제대로 힘을 받지 못했다.

로스쿨 측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20대의 어린 학생들만 입학시키는 것은 변호사시험 합격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다.

로스쿨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변시 합격률을 의식해 처음부터 30대 이상 연령층에 아예 로스쿨 입학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로스쿨이 취지대로 굴러가려면 변시 합격률도 상향시키고 다양한 경험의 변호사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손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 ▶ 부동산 투자는 [부릿지]
- ▶ 주식 투자는 [부꾸미TALK]
- ▶ 부자되는 뉴스, 머니투데이 구독하기

MT  머니투데이

로스쿨이 '개악'되는 생생한 과정...'지방대육성법' 뒤편길래[유동주의 PPL]

기사입력 2021-02-28 07:10 최종수정 2021-02-28 10:58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편집자주] People Politics Law...'국민'이 원하는 건 좋은 '정치'와 바른 '법'일 겁니다. 정치권·법조계에 'PPL'처럼 스며들 이야기를 전합니다.

[의치한약 지방 대학에 지역 출신 학생 '의무' 선발 강제하려다 애꿎은 로스쿨에 불똥 튄 이유는...]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박찬대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1.24/뉴스1

◆지방대육성법 제15조 제3항 개정 조문(2021.2.26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은 2023학년도부터 지방 의치한약학계열 대학 학부 과정과 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의 주 목적은 지방 '의학계열' 대학 입시에서 해당 지역 고교 출신을 일정비율 뽑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권고'형태로 같은 법률에 규정돼 있던 '노력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문구를 고치는 게 골자다. 부수적인 개정사항도 있지만 요지는 이것 하나라 봐도 된다.

문제는 이 개정안 통과에 관여한 이들은 전혀 예상 못한 '부작용'이 그들의 주 관심사도 아니었던 '지방 로스쿨'에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제 지방 로스쿨은 일반 전형 외에 '특별전형'과 '지역인재전형'이라는 두 가지 특수한 입시전형을 '의무'로 지켜야 한다. 이전까진 특별전형은 '의무'였지만 지역인재전형은 '권고'였다. 이 둘은 '정원 외'가 아니다. 정원 내에서 각각 7%(특별전형), 20%(지역인재전형) 이상씩 뽑아야 한다. 100명 정원인 지방 로스쿨이면 최소 27명 이상이 두 전형 출신이어야 한다. 서울 등 수도권 로스쿨엔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 인재'를 위한 '선의'가 '지방 로스쿨'엔 '악의'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는

언뜻보면 의학계열 입시와 마찬가지로 로스쿨 입시에서도 '지역인재'를 뽑도록 강제하는 게 '지역을 위한 개선'이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로스쿨 사정은 의대 등 의학계열과 전혀 다르다는 게 문제다.

'낮은 변호시험 합격률'이 이번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이 지방 로스쿨들에겐 '악몽'으로 작용하는 이유다. 현재 50% 초반대까지 내려간 변시 합격률은 수도권 포함 전체 25개 로스쿨 졸업생의 평균치다. 일반적으로 지역소재 지방 로스쿨 졸업생 합격률은 50%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로스쿨들 분석자료에 따르면 특별전형과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변시 합격률은 심각할 정도로 더 낮다. 일부 지방 로스쿨에선 '나쁜 인상'을 줄까 두려워 밝히지 못하고 있지만 '10% 대' 합격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과 지역대학 출신을 위한 지역인재전형으로 10명을 입학시키면 그 중 1~2명만 가까스로 변호사가 되는 게 현실이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18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인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열린 '어게인 218, 로스쿨개혁이 사법개혁이다' 킥대회에서 변호사 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외치고 있다. 이들이 도서관 대신 거리로 나선 이유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이 각각 도입 취지와 달리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응시인원이 아닌 입학정원이라는 고정된 인원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배출한 결과 매년 누적적으로 탈락자가 발생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2020.2.18/뉴스1

로스쿨, 특수상황 감안해 '지역고교 출신'으로도 문호 넓힌 뒤 '의무화'했으면 될 것...

지역인재전형이 '권고'형태로 법 조항에 들어갔던 몇년 전부터 지방 로스쿨들은 지역인재 '인정요건'을 '지역대학'으로 제한하지 말고 '지역고교'까지로 넓혀달라고 요구했다. 지역고교를 나와 서울권 대학으로 진학한 학부 졸업생들이 고향에 내려와 지방 로스쿨에 입학해도 '지역인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 요구는 교육부나 국회 교육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지방 로스쿨이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로스쿨 10여개 정도여서 전체 25개 로스쿨의 공통된 의견이 아닌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들이나 공동발의해 준 수십명의 의원들 그리고 국회 교육위에서 '지방 대학을 살리자'는 법안으로 이해하고 빠르게 통과시켜 준 교육위원들, 체계자구심사를 하며 무심코 넘긴 법사위원들, 본회의장에 앉아 별 생각없이 '어련히 소관 상임위에서 잘 만들어 올렸겠거니'하고 '찬성' 버튼을 누른 이백여명의 여야 의원 중 그 누구도 이 개정안이 지방 로스쿨에겐 '악재'가 된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회 교육위에 참석했던 교육부 차관이나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교육위법사위 전문위원들도 '무심코' 지역대학육성법 제15조 제2항의 '의학계열 대학' 부분을 개정하면서 제3항의 '전문대학원' 조항까지 '같이' 건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을 것이다.

특히 현재 '전문대학원'체제를 제대로 유지하는 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밖에 없고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은 이미 의치대로 거의 회귀했기 때문에 해당 조항(제15조 제3항)을 실제 적용받는 건 사실상 '로스쿨' 밖에 없단 것도 관련 국회의원들이나 관계자들은 제대로 몰랐을 수 있다.

결국 의치한 계열 대학에 지방 고교 출신을 의무적으로 뽑게 하자는 '지역구가 지방에 소재한'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민을 '기쁘게' 할 나름의 목적도 가졌던 이 개정안은 지방 로스쿨들에겐 뜻밖의 '걸림돌'이 된다.

10%대 변시 합격률 기록하는 특별·지역인재 전형 입학생들

지방 로스쿨에 지역 대학 출신을 일정비율 뽑도록 '의무화'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현재 그렇게 입학한 학생들이 3년 후 변시를 치르고 맞이하는 현실은 가혹하다. 그들 10명 중 8~9명은 변시에서 탈락한다. 의치한 계열로 진학한 학생들은 특별전형이나 지역인재전형 출신을 가리지 않고 4~6년 뒤 10명 중 9~10명이 국가고시에 합격하는 것과 대조된다. 의치한 계열과는 다르게 로스쿨 입학이 변시 합격을 보장하지 않다보니 취약계층의 합격률은 더 낮게 나온다.

취약계층이나 지역인재의 의치한 계열 입학은 '특혜'가 되지만 현재 상황에서 로스쿨 입학은 '특혜'가 아니다. 변시 합격률이 개선되지 않는 한 취약계층과 지역인재의 로스쿨 입학은 학교와 학생 서로에게 때론 '부담'이고 '비극'일 수도 있다.

현실이 이렇지만 25일 국회는 지방대육성법을 통과시켰다. 일반인이라면 '무지'가 용서된다. 하지만 국회와 행정부에서 중요 결정을 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어떤 '부작용'을 부르는 지 항상 '예민하게' 검토하고 예측해야 한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왜 지방 로스쿨들이 진작 적극적으로 지역인재전형을 '수정'해 달란 요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간단하다. 이제까진 '권고'였기 때문이다. '지역고교'출신까지 '지역인재'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불만을 가졌지만 '권고'였기에 그간 지방 로스쿨은 그들의 '낮은 변시 합격률'을 근거로 대야 하는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목소리를 내진 못했다.

변시 합격률이 이렇게 50%대로 추락하지 않았으면 지방 로스쿨 교수들도 지역인재와 특별전형 입학생들을 면접장에서 마주하면서도 그들의 3년 뒤 미래를 위태롭게 보는 '불안함'이 없었을 것이다.

교육부 차관도 잘 모르는 로스쿨 입시...특별전형 7%는 '정원 외'일까 '정원 내'일까

로스쿨은 교육부가 입학과 운영을 법무부가 변시를 각각 맡는 이중 관리체제다. 그러다보니 이번 사례처럼 교육부 관여 사항인 '입학'에선 의치한계열 전문대학원들과 '동급'처럼 취급됐다가 어이없는 '개악'을 맞게 된다. 교육부에게 로스쿨은 큰 관심사는 아니다. 그것은 이번 개정안을 심사하던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원회에 참석한 정종철 교육부 차관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정 차관은 지난 18일 오후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취약계층' 전형에 관한 논의 도중 "법전원(로스쿨)은 법전원법에 따라서 7%이상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차관의 설명을 들은 교육위원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논의를 진행시킨다. 하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로스쿨의 특별전형은 '정원 내' 7%다. 로스쿨 개원 이후 특별전형이 '정원 내' 선발인 점은 바뀐 적이 없다.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엔 '법학전문대학원은 매년 입학자의 100분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로 돼 있다.

차관 발언은 팩트부터 틀렸다. 차관이 읽은 교육부 작성자료, 그것을 바탕으로 소위 위원들에게 현장 배포된 국회 교육위 작성 참고자료 모두 그 부분은 오류였다. 그런데 현장에 있던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물론이고 차관, 전문위원들이 모두 알아채지 못했다.

로스쿨에 관심이 '1'도 없는 국회 교육위원들과 교육부 차관 등이 지방 로스쿨에 '재양'이 될 수 있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셈이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20대 폐기법안 '21대 재활용'이 부른 비극..."법안 '폐기'엔 그럴만한 이유도 있다"

지방 로스쿨에 지역 대학출신 전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더불어 민주당의 박완주, 서동용, 이정문 의원이다. 지난해 6월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세 의원실이 경쟁 하듯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다. 아마도 20대 국회 폐회로 자동폐기된 교육위 소관 발의안들을 모아 '법안 발의' 건수를 늘리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3명의 의원 지역구는 전남 순천, 충남 천안이다. 그 지역구 인근엔 전남대, 충남대 로스쿨이 있다. 이 2곳의 지방 로스쿨은 이번 개정안에 의해 직접 '타격'을 받는다. 세 의원들이 법안을 낸 전후 자신의 지역구 인근 로스쿨에 '이런 내용의 개정을 하려고 한다'며 의견이라도 간단히 물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20대 국회가 종합적으로 제대로 일한 국회였다고 할 순 없겠지만, 쟁점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폐기'시키는 '부작용'도 사실은 '적극적'인 입법 작용이다. 폐기된 법안들은 나름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 경우가 많다. 그런 법안들을 '주워담기'로 재활용 발의해 '발의 건수'를 늘리려는 '버릇'은 좋지 않다.

'누구'를 위한 속도전인가...'영터리 입법' 부추기는 '조급함'

대략 20대 국회부터 쟁점 법안이나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개정안들이 관련 당사자들 의견청취 과정도 없이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 통과되고 있다. 위헌적인 '떼법'도 '사망사고'나 '강력사건'과 연계돼 여론과 감정에 휩쓸려 심심치 않게 입법된다.

이번 개정안도 지난 18일 교육위 소위에서 의원 7명과 차관, 전문위원들이 약 30분 가량 모여 얘기한 게 전부다. '권고'가 '의무'로 강제될 경우 직접 영향을 크게 받는 지방 로스쿨들은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었다. 다수의 교육위원들이 법안소위에서 급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와중에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다수의 찬성 의견에 물렸다.

20대 국회에서 했던 실수를 21대 국회가 반복하고 있다. 급하지 않은 법안을 '지방 대학이 위기'라는 뉴스 기사에 지나치게 심취해 단 하루만에 통과시켜버리는 조급함은 'K-국회' 특유의 '나쁜 속도전'이다. 개정 목적은 의치한 계열 대학에 지역 고교 출신 학생을 더 뽑게 하는 것이었지만 '지방 로스쿨'의 위기는 이번 개정안으로 가중될 것이다.

이제 지방 로스쿨들은 당장 다음 주부터 지방대학육성법 제15조 제3항의 개정요구를 할 것이다. 교육부와 국회가 좀 더 예민하게 관련 사안을 제대로 점검했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 ▶ 부동산 투자는 [부릿지]
- ▶ 조 변호사의 가정상담소
- ▶ 줄리아 투자노트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동주(lawmaker@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etc&oid=008&aid=0004549972>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성과와 발전 방안 심포지엄



종합토론

토론 5

김기원 법제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학전문대학원의 4대 문제 해결방안

김기원 | 법제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I 법전원의 4대 문제

현재 법전원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가 있다. ① 입학전형과 과정의 공정성 ②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③ 법지식과 법적사고능력을 균형있게 갖춘 실력 있는 변호사를 양성하면서도, 5탈자 문제의 해결 ④ 구호에 그쳤던 유사법조직역/공무원의 로스쿨로의 일원화·통폐합 문제의 진전

이는 가능하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동시에 달성되지 못한다면 4가지 요소를 균형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형식적인 명분에 그치지 않는, 실효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주제발표 1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정성’ ‘경제적 취약계층’ 두 문제를 해결할 의견을 제시하고, 주제발표 3의 내용을 중심으로 ‘5탈자’ ‘유사법조직역 일원화·통폐합’ 문제를 해결할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II 주제발표 1 관련 입학전형 및 장학금에 대한 의견

1. 조립식 컴퓨터와도 같은 대학공교육제도의 체계

법전원은 대학공교육제도로, 완성품인 카메라나 스마트폰처럼 발전·개선할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법전원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소들을 분해하여, 수정·보완함으로써 발전시킬 수 있다.

아래의 내용에 인용된 설문조사 결과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2021. 3. 실시한 ‘법조인력체계의 방향성/법학전문대학원 개선에 관한 설문 조사’의 내용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중 3,056명이 응답하였다.

2. 학사·학석사·석사 과정 등 학위과정 위치의 검토

가. 석사 과정 법전원 (현행)

현행 법전원은 석사과정만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전공·경험 등을 가진 학사학위자가 석사과정인 법전원에 진학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다양성을 수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미국·일본·한국 외의 국가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방식이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석사과정에만 법전원을 두는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전공’이라는 취지는 실질적으로 달성되고 있으나, ‘다양하고 실질적인 경험’이라는 취지는 부분적으로만 달성되고 있다. 법전원 입학자는 법학 이외의 다른 전공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젊은 대학 졸업자인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나. 학석사 연계 과정 법전원

학사 과정과 석사 과정의 장점을 절충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석사 연계 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대학교에서 학생을 선발 할 때 1년마다 전국에서 1,000명 정도의 학생을 ‘학석사 연계 과정’ 생으로 선발한다. 해당 학생은 일반 학과(국문학과, 물리학과 등)에 입학하나, 잠재적으로 25개 법전원 중 하나에의 진학 가능성을 보장한다.

해당 학생은 4학년이 되어 법전원 입시에 지원할 경우, ‘연계과정 전형’으로 별도 정원 1,000명을 두어 선발하므로 경쟁률이 1:1이하여서 (적어도 하향지원을 할 경우) 선발될 가능성이 100%다. 성적에 따라 원하는 특정 학교의 법전원에 진학하지 못할 가능성은 있다. 만약 연계과정 전형이 TO를 다 채우지 못하면(중도 변심하여, 법전원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있을 것이므로) 그 만큼을 일반 석사 전형에서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예시) 2022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에서 ‘학석사 연계과정생’을 1,000명 선발했다. 2026년 법전원 입시는 1,000명을 ‘학석사 연계과정생’으로, 나머지 1,000명을 ‘일반 석사과정생(현행)’으로 선발한다. 2022년에 선발된 학석사 연계과정생 1,000명이 전국의 로스쿨에 지원하여 700명만이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여 진학의사를 밝혔다. 300명을 선발하지 못했으므로, 일반 석사과정생을 300명을 추가합격하여 1,300명을 선발한다.

3. 정시형 입학전형 추가 등 입학전형 다양화 검토

가. 수시형 입학전형 (현행)

법전원은 법학적성시험, 면접, 학점, 외국어능력, 이력, 자기소개서 등 종합적 성과를 모두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이는 대학입시의 수시·학생부종합전형과 비슷하며, 인재 선발제도의 보편적 방식이다.

수시형 전형이 보편성·수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공정하지 않다'는 점, '스펙, 나이 등을 고려하게 되어 어리고 우수한 학생에게 유리하다'는 비판 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 공정한 정시형 전형 및 법전원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다양성 전형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나. 정시형 입학전형

나이가 많고 경력과 스펙도 평범하나, 내일 치러지는 법학적성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다면 장학금을 받고 명문대 법전원에 진학할 수 있어야 할 여지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엄격한 형식적 공정성(정량평가 100%)을 갖춘 정시 전형의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 전형의 도입을 위해서는 법학적성시험 과목의 개편도 요구될 것이다. 아래는 설문조사 결과이다. 응답자 중 약 48%가 '정시형 입학전형' 도입에 찬성했고, 46%는 반대했다. 이 설문조사는 '법학적성시험 성적 100%'를 상정하고 있으나, 실제 정시 전형에는 외국어성적 등 다른 요소를 일부 반영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

[정시형 입학전형] 법학전문대학원은 일반전형,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 지방우대 전형을 두고 있으나, 이 전형들은 모두 '법학적성시험 성적, 학점, 외국어 능력, 자기소개서, 면접'을 선발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됩니다. 이에 다른 요인을 모두 배제하고 '법학적성시험 성적 100%'의 정량 평가만으로 정성적 요소와 관계 없이 누구나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게 하는 '정시형 입학전형'을 일부 도입하지는 논의가 있습니다. '정시형입학전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정량평가 100%인 '정시형 입학전형'은 불필요하다.	1405	(46%)
(2).정량평가 100%인 '정시형 입학전형'으로 총정원 대비 10%~20%를 선발해야 한다.	692	(22.6%)
(3).정량평가 100%인 '정시형 입학전형'으로 총정원 대비 25%~50%를 선발해야 한다.	799	(26.1%)
(4).다른의견	160	(5.2%)

다. 다양성 입학전형

방송통신 법전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다양한 분야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법학적성시험 성적이나 스펙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현행 '수시 전형'방식보다도 정성적·주관적 요소를 늘려, 정석적 엘리트가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이력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약 57%, ‘필요하다’는 의견이 약 39%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양성 입학전형]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논의와 관련, 다양한 분야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법학적성시험 성적이나 스펙을 요구하지 않는 등 정성평가를 강화하는 ‘다양성전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정성평가 중심의 ‘다양성 입학전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정성평가 중심의 ‘다양성 입학전형’은 불필요하다.	1768	(57.9%)
(2).정성평가 중심의 ‘다양성 입학전형’으로 총정원 대비 5~10%를 선발해야 한다.	937	(30.7%)
(3).정성평가 중심의 ‘다양성 입학전형’으로 총정원 대비 10%이상을 선발해야 한다.	265	(8.7%)
(4).다른의견	86	(2.8%)

라. 다양한 전형 병행

현재는 일반·특별 전형 모두 100% 수시전형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다. 이를 다양한 입시 전형을 병행해, 정시전형 50%, 수시전형 40%, 다양성전형 10% 등의 방법으로 병행 가능할 것이다.

4. 법학교육과정 3년제·4년제 등 교육연한 증가 및 실무수습 제도의 폐지 여부 검토

가. 3년제 (현행)

현재 법전원은 미국·일본 제도를 모방해 교육연한을 3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대, 약대 등과 비교할 때 교육기간이 짧다는 견해가 상당하다. 반면 학교에서의 학업은 3년이면 충분하다는 견해도 있다.

나. 4년제 등 교육연한 증가를 통한 실무/다양한 분야 교육

교육연한을 4년제로 늘려 다양한 법 분야, 실무교육 등을 하는 방향이다. 동시에 6개월 실무수습 제도를 폐지하자는 논의도 4년제의 실시와 연계되어 있다. 설문조사 결과 3년으로 현상유지가 약 46%, 4년으로 증가가 약 48%였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가 지난 2월 개최한 로스쿨 제도 개선안 제안대회에서, 입상팀 4개 중 3개 팀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안이기도 하다.

[법학전문대학원 4년제] 3년제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과정을 4년제로 연장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4년제의 장점은 다양한 법 분야, 실질적 실무교육 등을 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단점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교육기간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은 몇 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3년으로 현상유지	1430	(46.8%)
(2).4년으로 증가	1472	(48.2%)
(3).다른의견	154	(5%)

5. 법학적성시험 개편

가. 선택형 2과목, 논술형 1과목, 1일 시험 (현행)

현행 법학적성시험은 선택형인 언어이해, 추리논증 과목을 오전에 치르고, 이어 오후에 논술 과목을 치른다. 과목의 내용과 출제 방향성 등은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과 유사하여, 법전원 학생선발기준으로서 대체로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해당 시험의 점수를 학생 선발기준으로서 높은 비중을 부여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나. 과목 수 및 시험일자 확대

법학적성시험의 시험일수를 2~3일로 늘리고, 시험과목을 확대하며, 논술형 시험의 과목과 비중도 늘림으로서, 법학적성시험이 시험 자체로 우수한 인재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법학적성시험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 전형’의 정당성과도 연계된다.

6. 입학시 성적/가정형편에 따라 장학금 수령여부가 확실히 되도록 하는 제도 도입

법조인 양성제도의 공공성을 고려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성적·가정형편에 따라 법전원에 입학할 당시부터 교육연한 내내 100% 장학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입학전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특히 법전원 입학시에 전액 장학금 및 생활비의 지급을 확정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공식화·명문화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경찰대학교·사관학교·카이스트 등이 우수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지원을 유도하는 방식을 법전원에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입학시 성적이 우수하면 이후의 성적 등과 무관하게 3년간의 등록금 및 생활비가 보장되어,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예측가능성을 주는 것이다.



주제발표 3 관련 변시 자격시험화, 5탈자 문제에 대한 의견

1. 유사법조직역·법무 관련 공무원 선발과정 통폐합 및 5탈 문제 해결과 연계된 ‘유사법조직역·법무공무원 양성과정’으로의 통합 검토

가. 변호사 양성기관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문’)은 ‘변호사 수를 크게 늘려, 기존에 유사법조직역, 법학사,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 등이 담당하던 업무 상당수를 변호사가 담당하도록 하여 법치주의가 기업과 공직을 비롯해 사회 전 영역에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도입취지를 갖고 있었다. 또한 필요한 법조인력만큼 학생을 선발하고 충실한 양성교육을 함으로서 고시낭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법무부는 도입취지에 맞춰 2010년 ‘법조인접직역 업무조정 및 통폐합 방안 연구’를 시행했다. 행정고시 폐지도 검토되었다. 그러나 유사법조직역 통폐합도, 행정고시 폐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유사법조직역의 권한과 규모는 커지고, 변호사의 권한은 기존보다도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은 전통적인 변호사직역의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10여년 만에 변호사 수가 3배 이상 증가했다. 역사상 어느 국가에서도 유래 없었던 속도로 변호사 수 증가가 이루어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변호사 1인당 시장규모는, 변호사가 140만명이 넘어 세계에서 가장 변호사가 많은 미국보다도 작다. 변호사 비용은 어느 주요국가보다 낮다. 변호사의 공직진출 규모는 미미하다. 유사법조직역 통폐합 및 변호사의 공직진출 확대는, 변호사 수 증가에 맞춰 예정했던 계획을 그대로 이행해달라는 요구다.

의료계와, 군사쪽의 교육제도는 공교육제도로써 일관성이 있다. 의학·군사학과 무관한 과거의 학업경력으로 의료전문직 후보자와 장교/부사관 후보자를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에게 의학과 군사학을 교육한다. 일부가 낙오할 수 있으나, 상당수가(보통 80%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게 된다.

아래와 같은 상황을 상정해보자.

의과대학		육군사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치 의사 고시	한 의사 고시	학사장교 고시	변리사 시험 세무사 시험
약사 고시	간호사 고시	부사관 고시	노무사 시험 공무원 시험

이와 같이 교육제도가 구성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의학과와 육군사관학교의 존재를 체계부정합한 것으로 느낄 것이다. 상당한 의학실력을 갖춘 자도 간호학 고시에 낙방하는 상황에서, 유달리 의대만은 국·영·수 성적만으로 의사가 되는 것을 보증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법전원은 다른 제도와 의 체계일관성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변호사에게 어려운 법률사무를 담당시키는 사회구조를 취하고 있음에도, 대다수의 응시자를 불합격시키는 무한경쟁형 선발시험으로 유사직역 등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조종장교가 되지 못해도 일반장교가 되는 공군사관학교의 방식

우선 단순히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5탈자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높일 수 있을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의대 사례에 비추어보면, 5탈자가 거의 생기지 않으려면 완전한 자격시험에, 실질적인 합격률이 95% 안팎이어야 한다.(그럼에도 10년 이상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의대 졸업자가 소수 있다)

우리나라는 유사법조직역 시험 등 고시제도형 선발시험이 병행되며, 변호사가 가장 어려운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사회구조이다. 합격률 3%의 고시형 시험은 과도한 수험요구에 의한 부작용이 있다. 그러나 법전원처럼 양성과정을 바탕으로 시험합격률이 50%선에 10%가 변호사가 되지 못하는 적정량의 경쟁과 학업을 요구하는 것은 감수해야 할 부분이거나, 현실에서 빠른 시일내에 크게 바뀌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인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로 하고 매해 1,850명을 합격시켜도, 매년 100여명의 5탈자가 생긴다. 합격률이 95%에 달하는 쉬운 시험과 적은 학업요구가, 실무에 필요한 적정한 법지식과 법적 사고능력을 갖춘 변호사를 양성하는 좋은 교육방식이라는 주장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현실적 합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법전원과 법조계가 인재를 평가하는 제도와 문화는, 중위권 이하의 학생들이 충실히 학업에 임하도록 만들 실질적인 유인이 없다. 법전원 입학이 곧 변호사자격 취득을 담보한다면, 법전원이 단기간에 상당량의 학업성취를 쌓도록 학생들을 유인해온 구조도 붕괴될 것이다.

모두가 변호사를 보장받으면서도, 모두가 학업에 성실하게 임하는 이상적인 교육구조를 당장 설계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완전한 낙오자가 없는 방식을 고안해야 한다. 공군사관학교 생도 상당수는 조종장교가 되려고 입학한다. 그러나 조종장교 교육과정은 입교도 어렵고, 입교자 중에서도 상당수가 낙오한다. 하지만 조종장교가 되지 못했다고 '대학 졸업장만 든 조종장교 낭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낭인 발생을 막기 위해 '조종장교의 TO만큼만 학생을 뽑고, 경쟁 없이 편안하게 전원 조종장교 임관을 보장하는' 방식을 택한 것도 아니다. 최소한 일반장교 임관을 보장하되, 조종장교가 되기 위한 엄격하고 획일적인 경쟁 또한 요구하는 절충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고시제도는 무제한적으로 응시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불합격자에게 일정 지위를 보장하는 방식을 상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법전원은 학생 선발시점에서 인원수가 제한된다. 변호사 양성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 경쟁적인 학업을 요구하고, 이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이들 모두에게 적절한 자리를 줄 수 있다.

다. 변호사 양성기관, 법조유사직역 양성기관, 법무공무원 양성기관 기능의 병행·혼합 운영

사법연수원은 전원 법학을 충분히(불필요한 수험공부여서 과도하다고 말해질 정도로) 공부하여 입소했기 때문에, 최후의 1명까지 예외없이 변호사자격을 보장하는 방법으로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법전원은 법학을 학습한 집단이 아니므로, 전원 변호사자격을 보장한다는 주장이 현실화되기 어렵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변호사시험은 다소 경쟁적으로 운영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유사법조직역이나 법무 관련 공무원 등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불합격자에게 퇴로가 없는 고시형 선발제도의 폐해를 없애면서도, 상당한 학습을 요구하는 형태로 제도를 구성할 수 있다. ‘지역인재 공무원 추천채용제’가 법학전문대학원과 유사하게 적성시험 점수, 스펙 등을 요구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으로 통합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구성하면, 대학교육제도로 일원화가 가능하여 국가 전체의 교육체계의 일관성과 체계합치성을 유지할 수 있다. 고시제도의 문제점을 제거하고 대학교육제도의 장점을 수용할 수 있으면서도, 다소 경쟁적 학습을 요구하더라도 낙오자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 낙오자를 더 이상 갈곳이 없어서 실패자가 되는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는다는 교육제도학적으로 합리화될 수 없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퇴로를 줄 수 있다.

2. 반복적 학습·이해·암기로 인한 지필고사만으로 교육·검증할 수 없는 법적 사고능력 시험의 필요성

최소한 유사법조직역이나 공무원 등이 될 수 있어 낙오자가 없는 구조를 도입해도, 학업을 변호사시험 과목 위주로 하는 문제를 없애기는 어려울 수 있다. 변호사시험 과목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는 식의 해결책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 일정 수준의 엄격한 시험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성실한 학업조차 하지 않는 게으름을 용인하는’ 결과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를 고려하면 시험의 엄격성 자체를 완화하기보다는, 수험, 판례 위주의 학습보다는 리걸마인드를 높이는 자체에 의의를 두도록 만드는 시험과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학업으로 암기·체득된 법령이나 판례의 내용을 현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가 종종 그렇듯 ‘조문만으로 명확히 해석할 수 없어 견해가 갈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낳을지 여부를 논증하도록 하는 유형의 시험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시험 직전에 수험에 특화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평소 갖추고 있는 법적 사고능력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는 획일화·정형화된 수험공부만이 아니라, 법전원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수업이 보다 의미를 갖게 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성과와 발전 방안